

관세연구 25-02

www.kipf.re.kr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국제 비교

정재호·나지수

2025. 9.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나 지 수 특수전문직 3급(관세사)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	6
1. FTA 원산지 제도의 의의	6
2.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개요 및 절차	9
가.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개요	9
나. FTA 원산지검증의 방식 및 절차	10
다.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	16
3.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	18
4.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주요 사례	27
가. 페루산 녹두 수입의 원산지검증 사례	29
나. 스위스산 금괴 수입의 원산지검증 사례	31
III.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체계	36
1.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36
가. 관세법	37
나. 대외무역법	39
다. FTA 특례법	40
2. 우리나라의 주요 원산지 조사 관련 규정	44
가. 관세법상 원산지 조사	46

나. FTA 특례법상 원산지 조사	48
다.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52
IV.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비교	59
1. 미국	59
가.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59
나.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64
2. EU	74
가. EU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74
나.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79
3. 중국	82
가. 중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82
나.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88
4. 베트남	90
가. 베트남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90
나. 베트남과의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94
5. 인도	101
가. 인도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101
나. 한-인도 CEPA상 원산지검증	106
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10
1. 국제 비교	110
2. 문제 제기	113
가. 표준화되지 않은 원산지검증 절차	114
나. 원산지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	115
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소극적 대응	116
라. 원산지검증 절차의 복잡성 및 검증 대응 역량의 부족	117

3. 개선 방안	119
가. 원산지검증 절차의 표준화와 국제적 협력 확대	120
나. FTA 협정상 조항의 활용 및 체약국 간의 협력 강화	121
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원산지검증 시스템의 구축	122
라.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	124
마.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125
VI. 결론	127
참고문헌	131

표 목차

〈표 I-1〉 협정·유형별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	2
〈표 II-1〉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비교	8
〈표 II-2〉 FTA 원산지검증의 유형	11
〈표 II-3〉 원산지검증의 방식별 비교	12
〈표 II-4〉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13
〈표 II-5〉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23
〈표 II-6〉 보관 대상 원산지 증빙 서류	25
〈표 II-7〉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6
〈표 II-8〉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요청 및 종결 현황	28
〈표 II-9〉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추징 현황	28
〈표 II-10〉 FTA 수입 검증 결과 위반사유별 추징 현황	28
〈표 III-1〉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36
〈표 III-2〉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37
〈표 III-3〉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39
〈표 III-4〉 FTA 특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40
〈표 III-5〉 특혜 원산지검증과 비특혜 원산지검증 비교	44
〈표 III-6〉 원산지 위반 관련 과태료 대상	52
〈표 III-7〉 원산지 위반 관련 벌칙 대상	52
〈표 IV-1〉 미국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60
〈표 IV-2〉 한-미 FTA 개요	65
〈표 IV-3〉 EU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75

〈표 IV-4〉 EU의 Pan-Euro 원산지 규정의 구성 체계	78
〈표 IV-5〉 중국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82
〈표 IV-6〉 한-베트남의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95
〈표 IV-7〉 인도의 원산지 관리 강화 법적 근거	103
〈표 V-1〉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112

그림 목차

[그림 II-1] 원산지검증의 방식별 절차	12
[그림 II-2] 수입 원산지검증의 절차	17
[그림 III-1]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의 절차	58
[그림 IV-1] 정보 제공 요청서(CBP-Form 28)	69
[그림 IV-2] 결과통지서(CBP-Form 29)	70
[그림 IV-3] ROSA(원산지 규정 자체 평가 도구) 화면	79
[그림 IV-4] Form I의 일부	104

I. 서론

- 세계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역을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해외 임가공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등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더욱 복잡한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개념을 확장해 가고 있음

- 제품의 생산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산으로 제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문제는 무역에 있어 큰 도전이 되고 있음
 -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여러 국가의 원자재, 노동,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특히 최근 들어 제품의 생산에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 디지털 등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포함됨으로써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적하기 어려움

- 더욱이 오늘날 무역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원산지는 관세 특혜의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임
 - FTA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관세 혜택을 제공하나, 동시에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함
 - FTA 활용의 필수 요건은 원산지 규정의 준수이며,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적 절차를 넘어 생산과정, 재료의 조달, 운송 등 모든 무역 거래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의미함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미납 관세의 과세,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FTA가 도입된 후 매해 국가별 FTA 체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각국의 관세 당국에서는 FTA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보다 FTA를 얼마나 적법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가 이슈가 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EU 및 인도 등 주요 국들은 원산지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부분도 보완하고 있음
 -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원산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은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원산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표 1-1〉 협정·유형별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FTA 특혜	튀르키예	543	492	229	198	338	70.7%
	EU	135	50	71	68	71	4.4%
	인도	19	147	30	18	14	△22.2%
	아세안	56	14	23	16	13	△18.8%
	기타	12	11	10	18	27	50.0%
	FTA 합계	765	714	363	318	463	45.5%

자료: 관세청, 『24년 수출 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2025, p. 2.

-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은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
 - FTA에서의 원산지검증은 수출입 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FTA 특혜관세를 부여함으로써 FTA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함

- 동시에 체약당사국의 무역 거래자는 FTA 특혜 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
 - 이에 FTA는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특혜를 부여하나, 동시에 무역 거래자에게 복잡한 원산지 규정 준수라는 과제를 부과함
- 특히 원산지 규정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구축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원산지검증 운영과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함
-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 협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제도와 각기 다른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FTA 협정뿐 아니라 FTA 이행 및 원산지와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까지도 파악해야 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원산지 규정의 준수 또한 과제 및 장벽이 될 수 있음
 - 관세 당국도 원산지 규정의 관리 및 적용에 책임이 있으므로 기업이 다양한 협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¹⁾ 체약상대국 관세 당국의 협조 등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적 분쟁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페루 FTA 10년 차인 2021년 녹두 수입량의 급증으로 대대적인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 건에 대해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하였고 이에 수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²⁾가 최근 발생함
 - 스위스 수입 금괴의 원산지검증 사례는 FTA 체결 이후 최초의 대규모 원산지검증 및 추징 사례로서 기업에 원산지증명서 관리의 중요성과 원산지 소명 의무에 대한 엄격성에 대해 제시한 대표적 경우임

1) WC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preferential-origin.aspx>, 검색일자: 2025. 6. 17.

2) 청구 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 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기각함 (조심 2024 관 0074).

- 따라서 FTA 활용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원산지검증의 이행에 있어서는 체계화된 표준 절차가 필요함
-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무역협정의 보편화 등 무역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무역 관련 법규도 발전해야 하므로 현재의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산지검증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원산지검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검증 대응 부담을 완화하여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검증의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를 통해 현행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함
 -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관련 해당 국가의 국내 법령, FTA 협정문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의 제도 및 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특히 FTA 협정상 직접 검증 방식의 대표가 되는 미국, 간접 검증 방식의 EU, 혼합 검증 방식의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주요국을 선별하여 검토함
 - 베트남의 경우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이 모두 적용되는 사례로, 수입자의 편의에 따라 FTA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최근 원산지검증 강화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과 수입통관 시 'Form I 제출'의 도입 등 특이 사항이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산지검증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에 앞서 주요국의 특혜 또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비교, FTA 원산지검증의 사례 검토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제도에 대해 주요국의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데에 차이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2019)는 주요 교역국의 일반 원산지 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법령 체계 및 판정기준,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등에 대해 검토함³⁾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를 비교함⁴⁾
 - FTA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연구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에 대한 해석 및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에 따른 FTA 협정 위반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대다수임
 - 반면 본 연구는 FTA 특혜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 및 주요국의 국내 법령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원산지검증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행 원산지 검증 제도가 개선 및 발전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개요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원산지검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 FTA 원산지 체크리스트와 우리나라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관련 규정을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특례법」으로 구분하여 확인함
 - 제IV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을 비교하고 검토함
 - 제V장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현행 원산지검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교역국의 일반 원산지 제도 조사』, 2019.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산지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2015.

II.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

1. FTA 원산지 제도의 의의

- 국제 무역에서는 원산지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등에 대한 차등적 대우를 부여하므로 원산지는 수출입 통관을 위한 필수적인⁵⁾ 요소임⁶⁾
 - 원산지 규정은 국가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국내법 또는 국제 협정에 따라 확립된 원칙을 바탕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조항을 의미함⁷⁾
 - 원산지 규정은 지리적 표시와는 관련이 없음
-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관세 특혜 이외의 목적으로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할 수 있음⁸⁾
- 일반적으로 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를 부여하는 해당 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해 규정되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WTO 통일 원산지 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에 의해 규율됨

5) 통관 절차의 핵심은 첫째 품목분류, 둘째 과세가격 결정, 셋째가 원산지 판정임(WCO,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17).

6) WCO,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17.

7) WCO 개정 교토협약 부속서 K

8) 산업통상자원부, 2019. p. 1.

- 단 WTO의 「원산지 규정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부속서 II는 투명성, 소급 금지 및 비밀 유지 등과 관련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일반 원칙이 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⁹⁾
-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 동맹과 같은 상호 무역 특혜 또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개발도상국 특혜관세(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와 같이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비상호 무역 특혜에 적용되는 규칙임¹⁰⁾
 - 특혜 원산지 규정은 “회원국의 상품이 협정상 또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행정 결정으로, 1994년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넘어서는 관세 특혜를 부여한다”¹¹⁾라고 정의함
- 따라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무역 특혜가 의도된 국가 또는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므로 협정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정됨¹²⁾
 -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체약국 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를 기준으로 특혜를 부여하므로 관련 협정을 구성함
 - 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은 배타적인 역내 교역의 증대를 위해 특혜관세의 대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역내 가공 및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¹³⁾

9) WTO, “Technical Information on Rules of Origi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info_e.htm, 검색일자: 2025. 6. 17.

10) WTO, “Rules of Origi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e.htm#rules, 검색일자: 2025. 6. 17.

11)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제2항

12)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제3항

13) 산업통상자원부, 2019. p. 1.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 무역협정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원산지 표시, 관세 할당, 정부 조달 및 무역 통계 등에 활용됨¹⁴⁾
- WTO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행정 결정으로, 관세 특혜 부여로 이어지는 협정 또는 자유 무역 체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정의함¹⁵⁾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¹⁶⁾
- 수입품에 적용되는 경우: WTO 협정세율, 무역구제 조치의 적용 등
 - 수출품에 적용되는 경우: 자국산 표시의 적용 등
 - 국내 유통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원산지표기 등
- 또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a) 모든 비특혜 목적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b)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c)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d) 일관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함¹⁷⁾

〈표 II-1〉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비교

구분	목적	비고
특혜 원산지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특혜 - FTAs, GSP, GSTP 등	FTA 원산지 증명
비특혜 원산지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	원산지 표시
	보복관세, 덤핑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 실효성 확보 (사우디 등 일부 국가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	일반 원산지 증명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상관관계 분석』, 2019, p. 3.

14)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15) 상동

16) 산업통상자원부, 2019. p. 1.

17) WCO,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nonpreferential-origin.aspx>, 검색일자: 2025. 6. 17.

2.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개요 및 절차

가.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의 FTA 원산지검증¹⁸⁾은 특혜를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¹⁹⁾
 - 협의의 의미에서 원산지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함²⁰⁾
 - 광의의 의미에서는 원산지 요건 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 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함²¹⁾
- 원산지검증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및 불공정 무역 행위와 관세 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뿐 아니라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 관리를 목적으로 함²²⁾
 - 즉 FTA 원산지검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또는 조약 및 「관세법」, 「FTA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18) FTA 협정에서는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검증뿐 아니라 ‘원산지 확인’(「관세법」 제232조 등), ‘원산지 조사’(「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2조 등) 또는 ‘원산지 심사’(「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의 심사 개념 및 관세행정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등을 혼용하고 있음(김만길·정재완, 「한국과 미국, EU의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58권, 2013, pp. 267~286).

19)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7&cntntsId=1121>, 검색일자: 2025. 6. 9.

20) 상동

21) 상동

22) 상동

의미함²³⁾

- 포괄적인 FTA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및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제품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절차 요건으로 구성됨²⁴⁾
 - 원산지 증명은 절차 요건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나, 현재 원산지 증명의 정의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국제 기준은 없음
 -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또는 상품이 원산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되는 실제 문서(전자적 방식 포함)를 의미함
 - 보편적으로 각 FTA 협정문은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함
 - FTA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내법에 따름
 - WTO 원산지 규정 협정은 절차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개정 교토 협약은 특별 부속서 제2장에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해당 조항은 FTA에서의 다양한 절차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음
 - 따라서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절차 요건 등은 각각의 FTA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FTA 협정에 대한 이행법률이 있는 경우(예: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됨

나. FTA 원산지검증의 방식 및 절차

- FTA 원산지검증은 검증의 유형별로 <표 II-2>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23)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교육』, 2024.

24) WCO, *Guidelines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14(updated in 2018), p. 6.

〈표 II-2〉 FTA 원산지검증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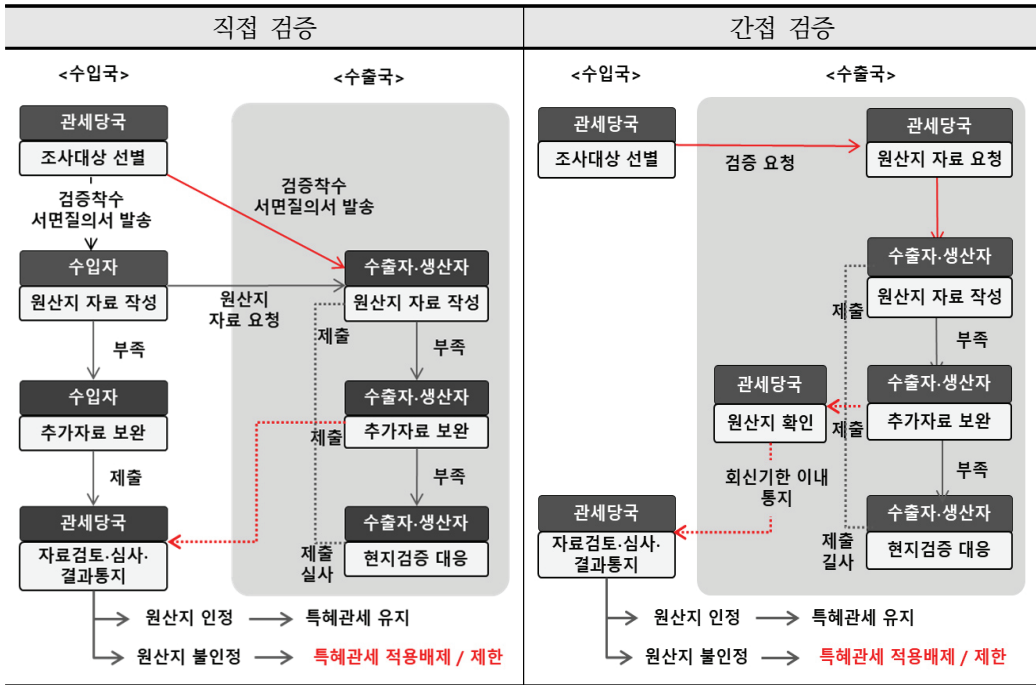
구분	검증 유형	개념
검증 목적	수입 검증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당사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
	수출 검증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
검증 방법	서면 검증	검증 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현지 검증	검증 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검증 대상자	국내 검증	국내 소재 검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국제 검증	체약상대국 소재 검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검증 주체	직접 검증	수입국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간접 검증	수입국 관세 당국이 체약상대국 관세 당국에 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 당국 입회·참관 포함)하여 수행하는 원산지검증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24, p. 8.

- 특히 FTA 원산지검증은 검증 주체에 따라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구분함²⁵⁾
 - ‘직접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어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검증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대표적이므로 미주형이라고도 함
 - ‘간접 검증’이란 관세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결과 통지를 회신받아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유럽형으로 분류됨
 - 필요한 경우 관세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검증에 입회 및 참관하는 것을 포함
 - 검증 수행 시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는 검증 방식으로 ‘선(先) 간접 검증, 후(後) 직접 검증’ 또는 ‘혼합 검증’이라고 하며, 아시아 국가에서 적용됨
 - 혼합 검증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간접 검증을 따르되 그 결과가 부족하거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음

25)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apply/con/1/1/>, 검색일자: 2025. 6. 4.

[그림 11-1] 원산지검증의 방식별 절차



자료: 저자 작성

<표 11-3> 원산지검증의 방식별 비교

구분	직접 검증	간접 검증
특징	• 수입국 과세당국이 직접 검증 주도	• 수출국 과세당국이 수입국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검증 수행
장점	•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 영업 비밀서류 등을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검증 당국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무역업자의 권익 확보	• 검증 당국과 검증 대상자의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여 정보 수집 등에 유리 • 실질적 현지 조사 가능
단점	• 수입국 과세당국의 행정 부담 • 검증 당국과 수출국 검증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 등이 어려움 •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따라 실질적인 현지 조사가 어려움	• 수출국 과세당국의 행정 부담 • 수출국 과세당국의 대응력에 따라 특혜 적용 배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검증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²⁶⁾
 - 사후 검증 원칙: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조사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실시함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 협정관세 적용 보류 대상자 및 관세 체납자 수입 물품 등은 수입신고 수리 전 원산지 조사를 수행함
 - 수입자 검증 우선 원칙: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제품 생산자, 재료 생산 또는 공급자 등에 대한 조사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실시함
 - 서면 검증 원칙: 서면조사를 우선하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지(방문) 조사를 수행함

- FTA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때는 <표 II-4>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²⁷⁾

<표 II-4>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검증 방식		회신		협정 근거
	간접 검증	직접 검증	회신 기한	회신 주체	
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 30일	수출자, 생산자	제5.8조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 3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5.7조
EFTA	수출당사국 관세 당국에 요청 (수입국 관세당국 참관 가능)	-	15개월	관세당국	부속서1 제24조
ASEAN	수출당사국 발급 기관에 요청	(예외) 방문조사	(간접) 2개월 (6개월 내 가능)	(한) 세관, (아) 발급기관	부속서3 부록1 제14조~ 제16조

26) 대한상공회의소, 2024.

2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표 II-4〉의 계속

협정	검증 방식		회신		협정 근거
	간접 검증	직접 검증	회신 기한	회신 주체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3개월 (6개월 범위 내 가능)	(한) 세관, (인) 발급기관	제4.11조~ 제4.13조
EU	수출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요청 (수입국 관세당국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간접) 150일 (직접) 90일	(간접) 수출세관 (직접) 수출자 등	제4.8조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의류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간접) 6개월 내 조사 완료, 12개월 내 통지 (직접) 30일 서면 요청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제4.3조 (섬유류), 제6.18조
튀르키예	수출당사국 관세 당국에 요청 (수입국 관세당국 참관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5조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3.23조, 제3.24조
캐나다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제4.6조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예외) 방문조사	(간접) 6개월	(간접) 관세당국	제3.23조
뉴질랜드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 9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 방문조사	6개월	(한) 관세 당국 (베) 발급기관	제3.21조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150일 (서면요청) 30일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제3.25조
중미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 30일	조사대상자	제3.24조
영국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국 관세당국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표 II-4〉의 계속

협정	검증 방식		회신		협정 근거
	간접 검증	직접 검증	회신 기한	회신 주체	
RCEP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권한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 30~90일	(간접) 수출자 발급기관 및 권한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캄보디아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간접 검증) 30~90일 (방문검증/수출자 등 동의) 30일	(간접)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2조
이스라엘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¹⁾	(예외) 방문조사 *수출자 등과 당사국 합의로 날짜 지정	간접: 10개월 (추가 정보 요청: 90일)	(간접) 수출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9조
인도 네시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¹⁾	(예외) 방문조사	간접: 2개월(추가 요청: 4개월) 방문 검증 수출자 /생산자 동의: 30일	(간접) 수출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3조
필리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간접 검증) 3개월 ²⁾ 방문 검증/ 수출자·생산자 동의) 1개월 ³⁾	(간접) 수출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부속서 4-가 15

주: 1) 제공된 결과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 서면 요청

2)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의 전 과정은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 완료

3) 실제 방문 및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및 그 결과의 관세 당국으로의 통지는 최대 6개월 내에 수행

자료: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검색일자: 2025. 6. 9.

다.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

- 일반적인 수입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원산지 정보를 분석한 후 검증 대상을 선별하여 원산지 조사를 수행함²⁸⁾
 - 검증 대상의 선별은 무작위 또는 다음의 원산지 위반 위험 등에 따라 선정됨
 - 무역 위험: 수입이 급증하거나 신규로 수입된 품목 등
 - 품목분류(HS) 위험: FTA에 따라 상당한 관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품목 등
 - 생산자 위험: 비당사국 내 생산시설이 있거나 조달한 내역이 있는 품목 등
 - 원산지 규정 위험: 품목분류의 변경, 역내 부가가치 비율·가공 공정 요건·완전 생산품 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품목

- 원산지검증은 우선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및 기타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함
 - 수입자에 대한 국내 원산지검증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에 대한 국제 검증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²⁹⁾
 - 원산지 질의서 등을 통한 수출자에 대한 서류 검증
 - 수출자 현장 방문 검증
 - 수출국에 검증 요청(국제 간접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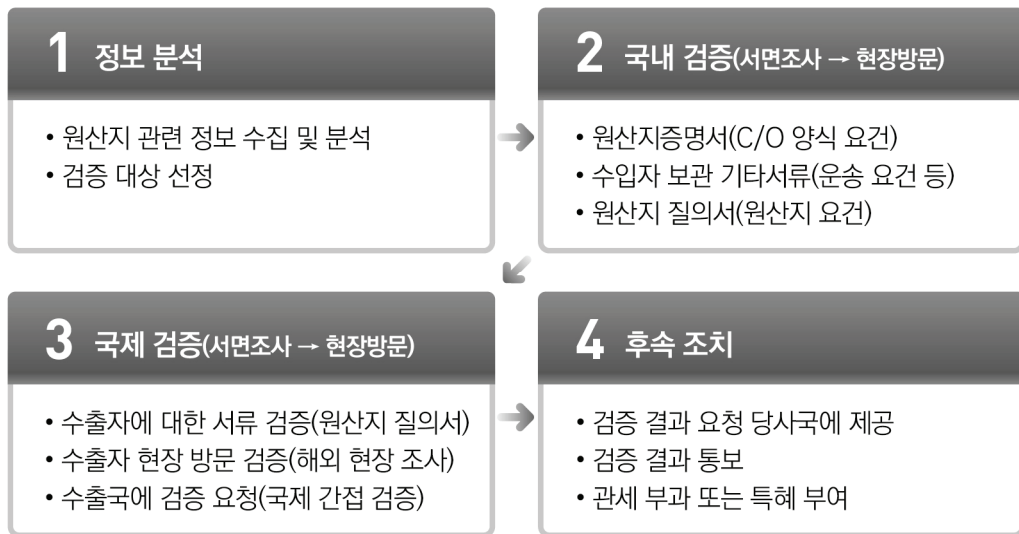
-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AEO(종합인증우수업체), 법인심사 중인 기업,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 소규모 성실 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FTA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28)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for Preference and Non-Preference」,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APEC, 인천, 2025, p. 8.

29) 상동

- 원산지검증 완료 시 검증 결과를 요청 당사국에 제공하고 수입자 등에게 통보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수입국 관세 당국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혜를 인정함³⁰⁾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검증요청에 대한 미회신, 미제출 등의 경우 특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원산지 관련 위반 행위 시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출자 등이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향후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됨

[그림 II-2] 수입 원산지검증의 절차



자료: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for Preference and Non-Preference』,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APEC, 2025, p. 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30) 관세청, APEC, 인천, 2025, p. 8.

3.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검증 체크리스트³¹⁾

-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실질적 요건과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등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원산지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거래 당사자 요건

- FTA의 적용은 수출 당사국의 거래 당사자와 수입 당사국의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
- FTA에서의 '거래 당사자'란 (i)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ii) 해당 상품을 수출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iii)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발급 신청의 주체가 되며 (iv) 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 다시 말해 거래 당사자 요건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 및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는 주체가 거래 당사자여야 함을 의미함
 - 특히 한-EU FTA 협정상 물품 가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 인증수출자³²⁾가 상업서류에 인증 번호를 포함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해야 함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이나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31)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7&cntntsId=1121>, 검색일자: 2025. 6. 9.

32)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검색일자: 2025. 6. 9.).

- 다만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는 일부 협정에서 일정 조건하에 인정됨
 -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를 명시한 경우는 가능함

나. 품목 요건

-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따른 FTA 협정관세 대상 여부와 양허세율 적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
 - 기본세율, 협정세율 등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율은 해당 품목의 HS Code에 따름
 -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HS Code가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율 표상에 규정된 특혜관세 양허³³⁾ 대상 품목이어야 함
- FTA 발효에 따라 협정세율은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몇 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되는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됨
 -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며, ‘상호 대응 세율’을 적용하기도 함
 - 한-아세안 FTA는 FTA 상대국이 미양허하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 대상, 즉 일반품목이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함
 -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 수입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우리나라도 해당 물품에 동일한 관세율(상호 대응 세율)을 적용함³⁴⁾

33)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란 국가 간 무역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내에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약정한 것을 의미함.

34) 예시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사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대신 필리핀 실행세율 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를 적용해야 하나, 필리핀의 모터사이클 실행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모터사이클에 5% 관세율을 적용함(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

-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별 세율의 적용 적정 여부도 검토해야 함
 - 2순위인 협정세율은 3순위(조정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 4순위(일반특혜관세), 5순위(잠정세율), 6순위(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됨
 - 또한 수입 연도 및 특정 기간의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운송 요건

-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름
 - 직접운송원칙이란 물품이 원산지 국가인 수출국에서 계약상대국인 최종목적지까지 운송이 중단 없이 연결되어야 원산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대부분 FTA 협정문은 직접운송원칙 등 운송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한-칠레 FTA의 경우 제4.12조(환적), 한-싱가포르 FTA는 제4.15조(직접 운송) 및 제5.9조 다(제3국 단순 경유 입증 서류), 한-아세안 FTA는 부속서 3 제9조(직접 운송)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 당사국에서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제3국 등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의 경우는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불인정함
 - 협정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 협정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경유 및 기항하면서 원산지 취득

- 비당사국 경유 시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하에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의 보존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 즉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다음 서류에 의해 증명한다면 직접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 증권 등 운송 서류(예: 통선화 증권 등)
 - 비원산지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및 일시 장치를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비가공 증명서)

라. 원산지 증명 및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절차 요건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 작성 방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수입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정한 FTA 특혜 협정세율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의 적정성 여부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됨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관,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및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임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당해 물품 원산지를 확인하여 정형화된 양식이나 송품장 등 서류에 원산지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서명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임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변경 및 추가 또는 해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함

- 한-EU 등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발급해야 함

□ 원산지검증 시 발급 주체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에 대해 검토함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체약국 소재 수출자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검토하고 발급하므로 발급한 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함
 -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발급 주체가 규정된 서식으로 발급 방식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함
 -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 등으로 판단함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기재 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 사항 누락 여부
 - 유효기간 경과 여부
 - 또한 제3국 송장, FTA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의 불일치, 작성 방법에 대한 형식적 오류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함

〈표 II-5〉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

구분	발급 방식	발급 주체	서식	유효기간	제출 면제
칠레	자율	수출자	통일 서식	서명일 2년	1,000달러 이하
싱가포르	기관	싱가포르(세관)	별도 서식	발급일 1년	
페루	자율	수출자	통일 서식	발급일 1년	
미국	자율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 (권고 서식)	발급일 4년	2,000달러 이하
아세안	기관	아세안(정부 기관)	통일 서식 (AK form)	서명일 1년	
인도	기관	인도(수출검사 위원회)	통일 서식	발급일 1년	
EFTA	자율 기관(치즈)	수출자, 생산자	신고 문안	서명일 1년	개인 소포, 휴대품 (금액 제한 없음)
EU	자율	수출자, 생산자, 인증수출자 (6천유로 초과)	신고 문안	발급일 1년	
영국	자율	수출자, 생산자, 인증수출자 (6천유로 초과)	신고 문안	발급일 1년	
튀르키예	자율	수출자	신고 문안	발급일 1년	
호주	자율(기관)	수출자, 생산자 기관발급: 호주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자율 (권고 서식)	서명일 2년	
캐나다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서식	서명일 2년	1,000달러 이하
중국	기관	중국(해관총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뉴질랜드	자율	수출자, 생산자	권고 서식	서명일 2년	
베트남	기관	베트남(산업무역부)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600달러 이하
콜롬비아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1,000달러 이하
중미	자율	수출자, 생산자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1,000달러 이하
RCEP	기관/자율	수출자, 생산자, 수출당사국 발급기관	당사국 합의 양식	서명일 1년	200달러 이하
캄보디아	기관/자율 (인증 수출자 한정)	기관: 캄보디아(상무부) 자율: 인증수출자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200달러 이하
이스라엘	기관/자율 (인증 수출자 한정)	기관: 이스라엘 (재무부 관세국) 자율: 인증수출자, 1,000달러 이하 수출자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소포 및 휴대품 1,000달러 이하

〈표 II-5〉의 계속

구분	발급 방식	발급 주체	서식	유효기간	제출 면제
인도 네시아	기관/자율 (인증 수출자 한정)	기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자율: 인증수출자(유보)	통일 서식	서명일 1년	200달러 이하
필리핀	기관/자율 (인증 수출자 한정)	기관: 필리핀(세관) 자율: 인증수출자(즉시) 생산자·수출자(단계적)	통일 서식 자율(송장 /규정서류)	서명일 1년	200달러 이하

자료: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검색일자: 2025. 6. 1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3)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등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등을 발급한 자는 해당 증명서와 관련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는 협정 및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다음의 일자로부터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³⁵⁾
 - 수입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단, 계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는 3년으로 함)
 - 특히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등을 발급한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 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표 II-6〉 보관 대상 원산지 증빙 서류

수입자 보관 서류	수출자 보관 서류	생산자 보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사본(전자문서 포함) - 단,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고 수출자·생산자가 C/O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 수입 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 • 수입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 수입품 국제운송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 받은 경우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에게 제공한 C/O 사본(전자문서 포함) 또는 C/O 발급 신청 서류 사본(전자문서 포함)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구입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 대장 • 생산자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생산한 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해당 물품의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재료를 공급·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 생산·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자료: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자료 보관 의무 및 제출 위반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은 동일함

마. 원산지 요건

□ FTA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및 직접운송원칙 등 품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산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또한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을 근거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실질적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질적변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된 보충 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함

〈표 II-7〉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협정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 공정 기준
			요건(범위)	기본 범위	계산법	제품가격기준	
한-칠레	-	-	RVC(45~80%)	공제법(45% 이상) 직접법(30% 이상)	공제법, 집적법	조정 가치	○
한-싱가포르	○	○	RVC(45~55%)	-	공제법	관세가격	○
한-EFTA	○	○	MC(25~60%)	-	MC(법)	공장도가격	○
한-ASEAN	○	○	RVC(35~60%)	40% 이상	공제법, 직접법	FOB	○
한-인도	○	○	RVC(25~50%)	35% 이상	공제법	FOB	○
한-EU	○	○	MC(25~50%)	-	MC(법)	공장도가격	○
한-페루	○	○	RVC(35~55%)	35% 이상	공제법, 직접법	FOB	○
한-미국	○	○	RVC(30~55%)	공제법(45% 이상) 직접법(30% 이상)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조정 가치	○
한-튀르키예	○	○	MC(20~50%)	-	MC(법)	공장도가격	○
한-호주	○	○	RVC(30~40%)	-	공제법, 집적법	조정 가치	○
한-캐나다	○	○	MC(10~65%)	-	MC법, 순원가법 (자동차), 집적법 (자동차)	공장도가격 (거래가격), 순원가	○
한-중국	○	○	RVC(40~60%)	-	공제법	FOB	○
한-뉴질랜드	○	○	RVC(30~40%)	-	공제법, 직접법	FOB	-
한-베트남	○	○	RVC(40~45%)	-	공제법, 직접법	FOB	○
한-콜롬비아	○	○	RVC(30~60%)	-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자동차)	조정 가치	○
한-중미	○	○	RVC(20~50%)	-	공제법, 직접법	FOB	○
한-영국	○	○	MC(25~50%)	-	MC(법)	공장도가격	○
한-RCEP	○	○	RVC(40%)	-	공제법, 집적법	FOB	○

〈표 II-7〉의 계속

협정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 공정 기준
			요건(범위)	기본 범위	계산법	제품가격기준	
한-캄보디아	○	○	RVC(40~60%)	-	공제법, 집적법	FOB	○
한-이스라엘	○	○	MC(50~60%)	-	MC(법)	공장도가격 (환급된(될) 내국세 공제)	○
한-인도네시아	○	○	RVC(40%)	-	공제법, 집적법	FOB	-
한-필리핀	○	○	RVC(40~60%)	-	공제법, 집적법	FOB	○

자료: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검색일자: 2025. 6. 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4.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주요 사례

- FTA 원산지검증은 상기에서 언급한 원산지 증명 등과 관련한 형식적 요건과 원산지가 체약국임을 판정하는 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요건 모두를 확인함
- 우리나라 관세청은 FTA 특혜 적용을 받은 수입 물품에 대해 무작위 또는 원산지의 적정성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약 340건의 수입 물품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약 500건에 대하여 검증을 종결함
 - 수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따라 특혜관세 배제 및 관세 추징 현황은 1년 평균 약 245건이었으며, 2023년까지 5년간 추징한 금액은 137,028백만원임
 - 최근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형식적 위반 검증에서 실질적 위반 검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³⁶⁾

〈표 II-8〉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요청 및 종결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체 수	C/O 건수	업체 수	C/O 건수	업체 수	C/O 건수	업체 수	C/O 건수	업체 수	C/O 건수
요청	362	11,037	396	15,731	228	6,312	477	10,870	234	3,767
종결	557	18,877	746	19,392	571	20,039	432	13,787	381	14,099

자료: 관세청, 『2024 관세연감』, 2024, pp. 79~8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II-9〉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의 추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4	28,953	380	35,267	294	26,737	191	21,562	150	24,509

자료: 관세청, 『2024 관세연감』, 2024, p. 8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II-10〉 FTA 수입 검증 결과 위반사유별 추징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위반유형 (요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 합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원산지 결정기준	108	18,744	233	23,617	131	9,172	121	16,340	593	67,873
품목요건	69	4,431	99	5,561	106	15,098	38	3,002	312	28,092
거래당사자	20	5,268	27	3,430	5	1,384	2	86	54	10,168
직접운송	-	-	3	1,881	1	9	-	-	4	1,890
기타 ¹⁾	17	510	18	778	51	1,074	30	2,134	116	4,496
합계	214	28,953	380	35,267	294	26,737	191	21,562	1,079	112,519

주: 1) 자료 제출 거부, 자료 보관 의무 위반, 상대국 미회신, 원산지증명서 위변조가 해당
 자료: 한일권,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FTA 무역리포트』, 통권 46호, 2024, p. 84.

36) 한일권,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FTA 무역리포트』, 통권 46호, 2024, p. 84.

- 다만 FTA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가 배제된 경우 수입자와 관세 당국의 견해 차이 등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페루산 녹두 수입 건’과 약 10년 전 대대적인 원산지검증 및 추징이 이루어졌던 ‘스위스산 금괴 수입 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스위스산 금괴 수입에 대한 원산지검증 이후 FTA 원산지검증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결과, 해당 원인에 의한 분쟁은 비교적 감소함

가. 페루산 녹두 수입의 원산지검증 사례

- 한-페루 FTA 발효 후 협정세율이 0%가 된 2021년, 녹두 수입량의 급증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대적인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 건에 대해 협정세율(0%)을 배제하고 관세(기본 관세율 607.5%)를 추징하였고 이에 수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함
- 원산지 서류 등에 따라 원산지 충족 및 불충족에 대한 결론이 사례별로 달랐으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특혜 세율의 배제 및 이에 따른 관세 등이 추징되었음

〈사례 II-1〉 페루산 녹두 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
- 개요
 - 청구 법인은 2021년 페루로부터 건조 녹두(Green Mung Bean)를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의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페루 FTA에 따른 쟁점 물품의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 및 페루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0%)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 법인에 관세(607.5%)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쟁점 처분)함
 - 쟁점 사항
(청구인 주장)
 - (a) 처분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쟁점 물품은 사전세액 심사 대상으로 한-페루 FTA 원산지검증 기간 1년 및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에 대한 심사 기간 15일을 더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15일에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기간이 지난날부터 검증을 시작하였음
-

〈사례 II-1〉의 계속

- (b) 쟁점 물품은 한-페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페루 관세 당국도 수출된 녹두가 페루산이라고 인정하였으나, 페루 농민들의 수준과 국가 행정시스템 상 우리나라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기는 어려움
- (c) 서면이 아닌 e-mail로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위법임: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 결과를 e-mail로 페루 관세 당국에 통지하였으나, 한-페루 FTA 상 통지 방법은 서면임

(처분청 의견)

- (a) 원산지 조사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므로 사전세액심사 처리 기간과는 전혀 무관하며 한-페루 협정에 따라 검증 개시 1년 이내에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바, 2022년 9월 원산지 조사를 개시하였고 1년 이내인 2023년 6월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였음
- (b) 또한 페루의 권한 있는 수출 당국인 대외무역관광부를 통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고 하였고 코로나로 e-mail 활용에 대해 페루 관세 당국도 동의했으므로 직접 수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c) 원산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은 적법함: 쟁점 물품의 생산 내역 확인을 위한 경작 농지 정보, 생산자의 생산 일지·회계 장부, 경작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결정 요지

- 쟁점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는 페루 당국의 원산지검증 정보에서 가공업자로 나타나고, 쟁점 물품의 구체적인 생산자나 경작 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 물품을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자료: 조세심판원 2024. 10. 7. 조심 2024관 007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관세 당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한-페루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 및 FTA 특례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주장함
 -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녹두의 원산지가 페루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페루 관세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를 회신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함
- 수입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나, 현지 수출자 및 생산자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 수입업체는 페루 현지 농민들이 영세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회계장부, 원산지확인서 등)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항변함
 - 또한 수입업체는 페루 수출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자료(거래 내역 등)를 한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주장함
- 이에 쟁점 처분은 검증 절차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 물품은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함
- 절차적 측면에서 관세 당국은 쟁점 물품의 원산지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 서면조사를 통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페루의 수출자가 기한인 9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사 결과를 수입자 등과 페루의 관세 당국(대외무역관광부 원산지 담당자)에 합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함
 - 실질적 측면에서 페루의 관세 당국은 이후 쟁점 물품이 한-페루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우리나라 관세 당국의 재조사 결과 페루 관세 당국이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판정하고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나. 스위스산 금괴 수입의 원산지검증 사례

- FTA 원산지검증 절차 및 실질적 원산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스위스 금괴 수입의 원산지검증 사례임
- 해당 사례는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스위스 금괴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였으나,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세 당국이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원산지검증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혜관세가 배제된 대표적인 예시임³⁷⁾

37) 김재식,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관세학 회지』, 제20권 제1호, 2019, p. 39.

〈사례 II-2〉 스위스 금괴 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 개요

- 수입자는 고순도 금괴를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스위스인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한-EFTA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함
-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한-EFTA FTA 발효(2006) 이후 스위스산 금괴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고, 해당 업체의 원산지검증을 스위스 관세 당국에 요청함
- 스위스 관세 당국은 당초 A사와 B사의 생산 물품은 스위스가 원산지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회신했고, C사와 D사의 물품에 대해서는 회신 기간인 10월 내 회신하지 않음
- 이에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당초 회신 및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이후 회신 기간 경과 후 스위스 관세 당국은 A사 물품은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당초 회신을 번복하는 한편, C사와 D사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최종 회신을 함
- 관세 당국은 스위스 관세 당국이 회신 기간인 내 회신하지 않은 점과 회신 기간 경과 후 제출한 최종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및 상품의 원산지 정보가 미포함된 점을 처분 사유로 추가함

• 쟁점 사항

(실체적 위법 사유)

- 쟁점 물품(고순도 금괴, HS 제7108.12호)에 대한 한-EFTA 원산지결정기준은 HS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택하고 있음
- 스위스 업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저순도 금괴(제7108.12호)와 금 함유 스크랩(제7112.91호)을 수입하여 고순도 금괴(제7108.12호)로 제련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함
- 원산지검증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저순도 금괴의 HS 6단위와 최종제품인 고순도 금괴의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는 스위스로 인정되지 않음

(절차적 위법 사유)

- 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검증요청 관세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됨
-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관해 계약당사국 간 다툼이 있어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가 있을 때까지 각 처분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결정 요지

- 스위스 관세 당국이 회신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가정)하더라도 원산지 증명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과세처분은 정당함

- 해당 사안은 원산지 판정에 대한 실질적 요건에서의 위법 사유와 원산지검증의 회신과 관련한 형식적 요건의 위법 사유에 대해 수입자와 관세 당국의 견해 차이로 불복이 발생함
- 형식적 요건 측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발생함³⁸⁾
 - 스위스 관세 당국과 수입자의 입장은 해당 사안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검증요청 이후 10개월 내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우리나라의 관세 당국은 회신 기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10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회신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함
- 실질적 요건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수입자는 금괴는 금 스크랩(HS 7112.91)과 저순도 금괴(HS 7108.12) 등을 원재료로 하여 스위스에서 정련, 주조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 완제품 금괴의 세번은 HS 7108.13에 해당하여 6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는 스위스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³⁹⁾
 - 관세 당국은 금 함유 스크랩(HS 7112.91호)과 저순도 금괴(HS 7108.12호)를 수입하여 스위스에서 제련 공정 후 고순도 금괴(HS 제7108.12호)를 가공하였으므로 6자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접 검증을 수행한 스위스 관세 당국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실질적 원산지 요건보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요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음

38)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4, p. 57.

39) 김재식, 2019, pp. 40~42.

- 1심 법원은 실질적인 원산지가 정당하더라도 원산지 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함
 - 한-EFTA FTA 협정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략) 협정은 원산지 증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 하더라도 부속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협정관세율을 거부할 수 있음⁴⁰⁾
 - 다만 원산지 증명 서류 및 절차와 관련한 형식적인 요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과세형평과 합목적적 해석 원칙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음⁴¹⁾
- 한편 대법원의 결정 요지는 실질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로, 원재료와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근거로 판단하였음
- 실질적 요건의 검증과 관련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오류로 판단함⁴²⁾
 - 또한 스위스의 원산지검증 회신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일체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세 당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함
- 두 사례를 통해 FTA 협정 적용 시 수입자 등에게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현행 원산지검증 제도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제기함
- 우선 '정당한 사유', '예외적인 경우' 등 FTA 원산지검증 절차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수입자와 관세 당국 간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40) 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1 구합 7403 판결

41) 김재식, 2019, pp. 40~42.

42) 박홍규, 2014, p. 57.

- FTA 협정상 원산지 증명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나 수출국 현지 생산자나 수출자 등의 영세성 및 관련 지식 부족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무역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관세 당국은 FTA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진행하므로 협정별 또는 국가별 관련 규정이 상이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국 관세 당국에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나 수출국 관세 당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에 따라 수입자와 관세 당국 간,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 당국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Ⅲ.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체계

1.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제도는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서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⁴³⁾

〈표 Ⅲ-1〉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구분		국제법	국내법
특혜/비특혜		WCO 개정 교토협약(부속서 K)	「관세법」, 「대외무역법」
특혜	FTA 특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등	「FTA 관세특례법」
	일반 특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WTO 개도국 간 협정(TNDC) UNCTAD 개도국 간 협정(GSTP)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특혜		WTO 통일원산지 규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자료: 박광서 외, 2014, p. 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16; 한국원산지정보원, 2019, p. 13.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16.

가. 관세법

-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원산지 제도와 관련하여 제9장 통관의 제1절 통칙 제2관(원산지의 확인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동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음

〈표 Ⅲ-2〉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법	령	시행규칙
원산지 표시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 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3조의2(한국 원산지 정보원의 설립) 제233조의3(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기관 협의회)	제236조의9(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
원산지 확인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기준)	-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76조(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사전확인	-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발급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등)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 자료의 제출 기간)

〈표 Ⅲ-2〉의 계속

주요내용	법	령	시행규칙
원산지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 및 조사)	제236조의7(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 제236조의8(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2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원산지결정(확인)기준은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의 기준이 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함⁴⁴⁾
 -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가공·제조(이하 생산 등)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며,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등 및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채취, 포획 등을 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포함함
 - 실질적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등을 한 경우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등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함
 - 2개국 이상에서 생산 등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HS 6단위와 다른 6단위 HS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단 운송·보세구역 장치 중인 물품의 보존,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단순한 선별·구분·절단·세척, 재포장 및 단순 조립, 도축 작업,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혼합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 6단위 HS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은 주요 공정 또는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4) 「관세법」 제229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및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⁴⁵⁾
- 원산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한 특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비특혜, 즉 일반 원산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관세법」,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3대 무역법임
- 1971년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으며, 2010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별도 장(제3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을 신설함⁴⁶⁾
- 다만 특혜 원산지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Ⅲ-3〉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법	령
원산지 표시	제33조(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제55조(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 등)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제57조(원산지표시 방법의 확인) 제57조의2(자료조사)
	제33조의2(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시정 조치)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의2(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자의 공표)

45) 「관세법」 제232조의2

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23.

〈표 III-3〉의 계속

주요 내용	법	령
원산지 판정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제35조(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제61조(수출입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제63조(이의제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발급	제36조(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6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준 등) 제90조(수수료) 제67조(단순한 가공 활동)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24.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다. FTA 특례법

- 「FTA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통관 등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⁴⁷⁾
 - 동법은 「관세법」의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법의 성격이 있으나,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협정을 우선 적용함⁴⁸⁾
 - 동법은 협정에서 의미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수입 물품의 특혜(협정)관세 적용 및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

〈표 III-4〉 FTA 특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법	령	시행규칙
원산지 결정기준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제4조(원산지결정기준) 제5조(비원산지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협정관세 적용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제5조(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등)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4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4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 Ⅲ-4〉의 계속

주요 내용	법	령	시행규칙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발급	제10조(원산지증명)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 지원)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9조(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감독 등)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등)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6조(수수료) 제19조(수출물품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기간 등) 제20조(수입물품 원산지 오류 수정 신고 기간) 제21조(자료 제출자 및 자료 제출기한)
인증 수출자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제17조(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 조사의 연기 신청) 제13조(체약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5조(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7조(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22조(서면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의 결과 통지기간 등)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기간 등)

〈표 III-4〉의 계속

주요 내용	법	령	시행규칙
차별	제44조(별칙) 제45조(양별규정) 제46조(과태료)	제50조(비밀 유지)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주: 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전부 개정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27.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함⁴⁹⁾
 - 다만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함⁵⁰⁾
 - 1. 수입자가 「관세법」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⁵¹⁾
 - 다만 세관장은 하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협정에 따름) 이하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분할 수입 등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2.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및 수입 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고시된 물품

4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5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고시된 물품
-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함⁵²⁾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함⁵³⁾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 물품의 선적 완료 전까지 신청서에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완료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 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발급기관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⁵⁴⁾
- 다만 다음과 같이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신고 수리 전에 심사함⁵⁵⁾
 - 1.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5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53) 상동

5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55) 상동

-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2. 우리나라의 주요 원산지 조사 관련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표 III-5>와 같이 구분됨

<표 III-5> 특혜 원산지검증과 비특혜 원산지검증 비교

구분	특혜 원산지검증	비특혜 원산지검증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특례법」 제117조 •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제71조(제2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33조 •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4조~제106조(제3편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검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업체, 생산자의 대리인 또는 해당 상품의 거래, 유통, 운송의 대리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가의 관세 당국 및 기타 권한 있는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
검증 절차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검증: 서면 검증 → 현장 검증 • 국제검증: 직접 검증 + 간접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검증: 서면 검증 → 현장 검증 • 국제검증: 수출국의 간접 검증¹⁾

주: 1)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간접 검증만 적용되며, 직접 검증은 특혜 원산지검증에 한함
 자료: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for Preference and Non-Preference」, APEC 2025, Korea, 2025.

□ 원산지 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FTA 특례법」, 관련 시행령·규칙 및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함⁵⁶⁾

- 법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 조사는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동 훈령은 다음의 각 물품에 적용함⁵⁷⁾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품
 -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품
 -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발급된 수출 물품
 -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동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함
 - 원산지 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 조사를 병행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 조사할 수 있음⁵⁸⁾

- 원산지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함⁵⁹⁾
 - 원산지 조사의 중요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세관장의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관할세관을 조정할 수 있음
 - 만일 조사 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이 함
 - 원산지 조사를 수행할 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FTA 특례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⁶⁰⁾
 -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⁶¹⁾
 -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⁶²⁾

56)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57)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58)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59)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60)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출입자 등(계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또는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등에 따라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를 자료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 포함)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61)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⁶³⁾
-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⁶⁴⁾
- 「관세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조사 권한의 남용금지⁶⁵⁾
-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중복 조사의 금지⁶⁶⁾
-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계약상대국(수출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가. 관세법상 원산지 조사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가의 세관 등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⁶⁷⁾
 - 세관장의 확인 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는 조사 사유 및 확인 요청 사항,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기준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함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의 수입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정확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및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⁶⁸⁾

62)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63)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함.

64)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하고, 관세조사 등을 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함.

65) 세관공무원이 원산지 조사를 하는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됨.

66)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받은 자를 재조사할 수 없음.

67) 「관세법」 제233조

- 현지 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음
 -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이유, 조사할 내용, 법적 근거 등⁶⁹⁾에 대해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 대상자의 폐업 등을 제외하고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⁷⁰⁾
 -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⁷¹⁾
 - 세관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 기간에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 가능), 보정기간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혜 관세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함⁷²⁾
- 외국 세관 등이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외국 세관 등의 회신 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68) 「관세법」 제11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69) 현지 조사의 경우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 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 기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사항 포함)에 대하여도 안내해야 함(「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 3).

70) 「관세법」 제11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 제3항

7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 제4항~제7항

72) 「관세법」 제233조

나. FTA 특례법상 원산지 조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 상대국 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⁷³⁾),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⁷⁴⁾
 - 서면조사를 우선하며 그 결과 원산지 증명의 확인이 어려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⁷⁵⁾
 -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전심사)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 등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전에 그 의문 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⁷⁶⁾
 -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⁷⁷⁾는 관세청장 등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⁷⁸⁾
 -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이하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 관련 사항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3)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위와 정확성 등을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7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77) 원산지 사전심사는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한-EFTA의 경우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규정된 바가 없어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함(관세청,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안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5. 6. 24.).

7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에서 사전심사 대상인 사항
 - 기타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 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⁷⁹⁾
 - 제출자료 미비 등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20일 기간 내 보정 요구 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 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 시, 수입 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함⁸⁰⁾
- (사전 통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할 때는 수입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 서면조사를 하려면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대상 물품, 조사 기간, 조사 이유, 조사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조사 기관과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등(이하 대상 물품 등)을 통지하여야 함⁸¹⁾
 - 서면조사의 통지 시 조사 대상자에게 원산지 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지 조사를 하려면 조사 개시 30일 전까지⁸²⁾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 기한과 대상 물품 등을 통지하여야 함⁸³⁾
 - 계약상대국의 조사 대상자를 현지 조사하는 경우 개시 전 조사 대상자에게 대상 물품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⁸⁴⁾

7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8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8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82) 단 국내 거주 수입자, 수출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현지 조사 통지를 할 수 있음.

8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계약상대국의 대상자가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통보하거나 동의 거부 시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음⁸⁵⁾
- 현지 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1회에 한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 기간은 사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⁸⁶⁾
- 세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 통보 또는 동의 거부 시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하나, 계약상대국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⁸⁷⁾

□ (조사 기간) 세관장은 법 및 협정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여야 함⁸⁸⁾

- 세관장은 국내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기간 이내에 조사 기간을 정함
 - 서면조사: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현지 조사: 조사 대상자의 사업장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로 함)
- 다만 한-미 FTA 적용 물품은 다음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 예비 결정 내용 제공 후 추가 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⁸⁹⁾부터 90일
- 원산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2회 이상 연장 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기간 연장 시 조사 대상자에게 '원산지 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함

8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85) 상동

8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8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88)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5조의2

89) 추가 정보 미제출 시 예비 결정 내용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제출 완료일로 간주함.

-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등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함
 -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 및 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결과 통지) 세관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 완료 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⁹⁰⁾에 조사 대상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⁹¹⁾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⁹²⁾
 - 세관장 등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세관장 등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정 사항이 경미할 때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 (사후 조치) 세관장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세 전 통지를 거쳐 해당 부족 세액이나 과다 환급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함⁹³⁾
 - 다음에 해당하는 원산지 조사 대상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함⁹⁴⁾

90) 한-아세안(제15조), 한-인도(제4.12조), 한-베트남(제3.21조), 한-중국(제3.23조), 한-인도네시아(제3.23조), 한-필리핀(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통지는 방문일부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함.
 9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25조
 9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9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7조
 94)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표 III-6〉 원산지 위반 관련 과태료 대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서면/현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고도 세액 정정·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지 않은 자

자료: 「FTA특례법」 제36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7〉 원산지 위반 관련 벌칙 대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세관장 등의 요청 서류를 거짓 제출한 자 • 사전심사 필요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서류를 미보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한 자는 제외)

자료: 「FTA특례법」 제34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1) 수출 물품 원산지 조사⁹⁵⁾

- (조사 대상) 관세청장은 계약상대국의 요청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음
- 원산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정보 제공 및 이의제기 포함)을 요청받은 경우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9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제37조

-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 정부 기관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 수출 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은 수출 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는 등의 경우 원산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혐의가 있거나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의 조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1회 한해 6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국내 서면조사) 원산지 조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조사를 우선함
- 세관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통보하고 '원산지 조사 표준질의서'를 포함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기한 내 불가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 5일 이상 45일 이내 보완 요구가 가능함
 - 조사 완료 후 조사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 조사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소명 및 의견 제시 기회 부여가 가능함
 -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마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결과통지서로 통지함
- (국내 현지 조사) 세관장은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지 조사를 우선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자가 현지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 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조사 대상자가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 계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 수출 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예정 통지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함
- 조사 대상자는 천재지변, 대상자의 질병, 관련 장부 압수 등으로 현지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현지 조사 시 다음을 조사함
-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
 -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 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 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 내역 등
- 조사 완료 후 결과 통지 등은 서면조사 절차를 준용함
- (정기조사) 관세청장은 수출 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 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 현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⁹⁶⁾
- (공동 조사) 관세청장은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 물품에 대한 공동 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해야 하며, 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음⁹⁷⁾
- 조사 개시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원산지 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현지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예정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96)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제48조

97)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제48조

- 공동 조사가 완료되면 관세청장은 체약국 관세 당국과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평가회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함

2) 수입 물품 원산지의 국내 조사⁹⁸⁾

- (조사 대상)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등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음
 - 원산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 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 정부 기관에서 위반 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 수입 물품의 원산지 위반 혐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 경우
 -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정보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 또는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 통관, 심사 및 조사 부서로부터 특혜 원산지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 정부 기관의 요청 및 외부인의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 방식에 의한 경우
- (국내 서면조사) 세관장은 수입 물품에 대한 검증 시 국내 서면조사를 우선함
 -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서와 조사 안내문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관함

98)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제59조2

- 수입자가 서면 요청 시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조사 통지는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함
 -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다음을 중점적으로 확인함
 -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품목분류와 적용 세율의 적정 여부
 - 협정에서 정한 직접 운송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등
 - 세관장은 서면조사 실시 후 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조사 결과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예비 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정보 제출 기회를 제공함
 - 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예비 결정통지 절차 시 추가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함
- (국내 현지 조사)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음
- 다만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현지 조사를 우선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자가 현지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경우
 - 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위반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예정 통지서와 청렴 협약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관함
- 현지 조사의 연기 및 조사 절차는 수출 물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3) 국제 직간접 조사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는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⁹⁹⁾
 - 조사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계약상대국의 거주하는 자에 대한 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함
 -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며 서면조사 결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해야 하나,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지 조사를 우선할 수 있음
 - 조사 절차 등은 상기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와 동일함

- 또한 계약상대국의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관한 확인을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¹⁰⁰⁾
 - 관세청장 등은 다음의 경우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음¹⁰¹⁾
 - 수입자를 대상으로 (i)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또는 (ii)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관세청장 등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함¹⁰²⁾
 - 계약상대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는 요청 사유, 요청 사항 등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기타 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 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

9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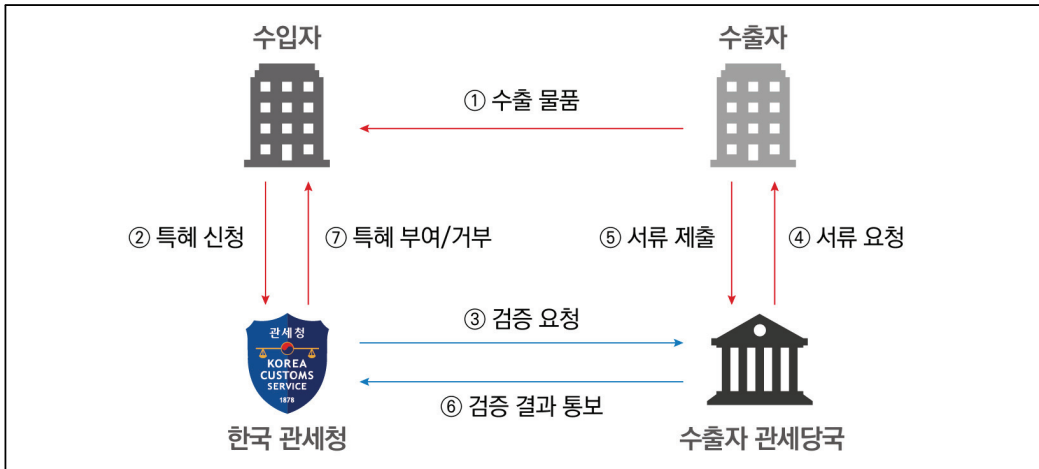
10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

1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02) 상동

- 계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 회신해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알려야 함¹⁰³⁾

[그림 III-1]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의 절차



자료: 관세청, APEC, 202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03) 상동

IV.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관련 법령 비교

1. 미국

가.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미국의 경우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19 U.S.C 및 Tariff Act of 1930)」을 근거로 하고 있음¹⁰⁴⁾
 - FTA와 같은 특정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 규정은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규정을 국내 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임¹⁰⁵⁾
 - 미국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크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은 일방적 특혜 규정과 양자 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 규정으로 구분됨¹⁰⁶⁾
 - 일방 특혜 규정은 일반관세특혜제도(GSP), 카리브해유역경제복구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상 특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상 특혜, 미속령특혜제도 등이 있음
 - 쌍방 특혜 규정으로는 USMCA를 포함하여 2025년 7월 기준 20개국과 총 1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1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47.

105) 상동

106) 상동

〈표 IV-1〉 미국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국제법	국내법 ¹⁾	
특혜	FTA 특혜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ILFTA)	19 USC 2112 note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북미자유무역(NAFTA)	19 USC 4501-4732 *19 USC 3301-3473
		요르단 자유무역협정(JOFTA)	19 USC 2112 note
		칠레 자유무역협정(CLFTA)	19 USC 3805 note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SGFTA)	19 USC 3805 note
		호주 자유무역협정(AUFTA)	19 USC 3805 note
		모로코 자유무역협정(MAFTA)	19 USC 3805 note
		바레인 자유무역협정(BHFTA)	19 USC 3805 note
		오만 자유무역협정(OMFTA)	19 USC 3805 note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협정 (CAFTA-DR)	19 USC 4001-4112
		페루 무역진흥협정(PETPA)	19 USC 3805 note
		한국 자유무역협정(KORUS)	19 USC 3805 note
		콜롬비아 무역진흥협정(COTPA)	19 USC 3805 note
		파나마 자유무역협정(PATPA)	19 USC 3805 note
일반 특혜	일반관세특혜제도(GSP) - General Note 4(19 U.S.C 1202) - 19 USC 2406 - 19 CFR 10.171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 General Note 7(19 USC 1202) - 19 USC 2701 - 19 CFR 10.191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협정 - General Note 16(19 USC 1202) - 19 USC 3701 - 19 CFR 10.178a, 10.211 미속령 특혜제도	
비특혜	1994 GATT 실시법	판례법: 주로 원산지판정기준 1930 관세법 • 원산지표시 - 19 USC 1304 - 19 CFR Part 134.0 • 원산지결정기준 - 19 CFR 102.0 • 정부조달품 원산지표시 - 19 USC 2511 et seq. (19 CFR 177.21)	

〈표 IV-1〉의 계속

구분	국제법	국내법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와 섬유제품 원산지표시 - 7 USC 1854 - 19 CFR 3592 - 19 CFR 12.130, 102.21 덤핑방지법: 상무성의 원산지결정 자동차 라벨링법: 원산지표시의무 미국산 우선구매법

주: 1) FTA 협정과 관련한 국내법은 연방 관세법 기준으로 작성
 자료: 최홍석·류원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 167.; 박광서 외,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 53~57;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상관관계 분석』, 2019, p. 1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미국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FTA 협정세율 적용 외의 원산지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함¹⁰⁷⁾
 - 특혜 원산지 기준은 한-미 FTA 등 FTA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함
 -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주로 판례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즉 원산지 국가란 수입된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 변형¹⁰⁸⁾’이 있어야 함¹⁰⁹⁾

-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존 국내법과 FTA 등 협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FTA의 이행을 위한 법률 및 동 법의 집행을 위한 연방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¹¹⁰⁾

107)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2025.
 108)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은 품명, 특성, 용도 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미 CBP가 개별 사례별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2025.).
 109) 19 CFR 제134조
 110) 김정훈,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따른 양국 관세 당국의 제재 규정 비교」, 『연세대 글로벌비즈니스 법학연구원』, 제9권 제1호, 2017, p. 148.

- 미국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한-미 FTA 이행법(19 U.S.C. § 3805 note)」을 제정하였음
 - 「한-미 FTA 이행법」은 5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원산지 규정 등은 Title 2(Customs provision)에 규정되어 있음
 - 동 이행법의 연방 행정부의 행정명령서인 「미국 연방 행정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Title 19에도 'Subpart R - United State-Korea Free Trade Agreement'을 추가함으로써 「한-미 FTA 이행 연방 행정규정(19 CFR Part 10, Subpart R)」을 규정함
 - 또한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한-미 FTA 운용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 실무지침(U.S.-Korea FTA Implementation Instruction)'을 제정함
 -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해 제정된 상기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미국 관세법」 및 「미국 연방 행정규정집」 관세편을 준용하도록 조문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WCO 관세 협력위원회의 국제상품분류를 자국의 기준에 맞게 세분화한 미관 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HTSUS)를 채택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보충서(supplement 1)의 형식으로 특혜 관세율 및 적용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¹¹¹⁾
- 한-미 FTA의 경우 HTSUS에 2012년 2월 반영되어 'USITC Publication 4308'이 발효되었으며, 해당 부속서(Annex)에 명시된 것처럼 한-미 FTA 협정상 특혜 세율이 반영된 보충서인 'General note 33(GN 33)'에 세부적 내용을 규정함
 - GN 33에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해석, 품목번호별 원산지 기준 등이 규정됨
- (사전심사) 미국도 CBP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미 관세청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음

111) 상동

- 수입자, 수출자, 이해관계자 및 대리인은 서면 또는 온라인(e-Rulings Template)을 통해 원산지 및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본부 또는 품목분류전문부서인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에 신청할 수 있음¹¹²⁾
 - NCSD 등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발행해야 함
 - 본부 및 다른 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연 발생 시 90일 이내에 발송될 수 있음¹¹³⁾
 - 원산지 판정은 다양한 생산 단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정보를 참고함¹¹⁴⁾
 - 각 원료가 생산되거나 수확된 국가
 - 다양한 생산 단계가 발생한 국가
- (제재) 미국의 원산지 규정 위반 행위는 사기, 과실 및 중과실과 자료 보관 의무 불이행 등이며, 특혜관세 적용의 배제 외에도 미 관세법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함¹¹⁵⁾
- 원산지 허위 증명에 의한 처벌은 19 U.S.C.§1592(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사기 위반: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벌금
 - 중과실: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단 위반 사항이 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시 관세의 40% 이하 적용)
 - 과실: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단, 위반 사항이 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시 관세의 20% 이하 적용)

112) U.S. CBP, "Korea FTA Summary," <https://www.cbp.gov/document/guidance/korea-fta-summary>, 검색일자: 2025. 6. 16.

113) 상동

114) 상동

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2008.

- 원산지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에 대한 의무 및 처벌은 19 U.S.C.§1508(자료 보관)과 19 U.S.C.§1509(장부와 증거에 대한 심사)에 규정되며, 원산지와 관련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됨¹¹⁶⁾
 - 고의로 인한 경우: 해당 개인은 건당 10만달러 이하 또는 상품 가격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
 - 과실: 해당자는 건당 1만달러 또는 상품 가격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
 - 단 자연재해에 의한 분실, 다른 증거에 의해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등의 경우는 부과되지 않음

나.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은 2012년 3월 발효되었으며, 2024년까지 제7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됨
 - 한-미 FTA상 원산지 관련 사항은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절차에서 규정함
- 한-미 FTA의 법적 근거는 미국 관세법 시행규칙인 19 CFR 제10.1001조~제1034조 (Subpart R)에 있음
 - 제10.1001조~제1002조는 일반조항을, 제10.1003조~제1009조에는 수출입 관련 조항을, 제10.1010조~제1012조에는 관세환급 관련 조항을, 제10.1013조~제1029조에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10.1030조~제1033조에는 처벌 조항을 명시함¹¹⁷⁾
 - 특히 특혜관세 대우 신청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은 제10.1026조에 규정됨

116) 상동

1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56.

〈표 IV-2〉 한-미 FTA 개요

일반 정보	
시행일/만료일	2012년 3월 15일/없음
관세 철폐	2026년 1월 1일(15년), Annex3-B
물품취급수수료(MPF)	원산지 상품에 대한 면제, 19 CFR 24.23(c)(12)
직접 수입	세관 통제를 벗어나거나 제3국 추가 가공 금지; 19 CFR 10.1025, GN 33(c)(iii)
의무 준수 책임자	수입자
관련 규정	
HTSUS 일반 주(GN)	GN33
미국 법령	19 USC 3805
CFR	19 CFR 10.1001-1034(Subpart R)
원산지 표시 규정	19 CFR 134
원산지 검증 관련 규정	Article 6.18; 19 CFR 10.1026
원산지 등	
원산지 관련 규정	GN 33(b); 19 CFR 10.1014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WO/WP/WOM), 세번변경기준(Tariff Shift)/부가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 규정	GN 33(o)
2007 HTSUS 및 2012 HTSUS 준수한 세번변경기준	대통령령(Pres. Proc.) 9072
화학반응 및 관련 원산지 규칙	HTS Ch27-40; GN 33(n)(vii)-(viii)
특별 원산지 규칙	없음
환급 제한	없음
수리 및 대체 조항 (CBP 요청 시) 수입자 소지 서류	19 CFR 10.1034, 9802.00.40/50에 따라 면제 19 CFR10.1004의 항목을 포함한 자유 형식의 인증
부가가치	
역내가치기준(RVC) 규정	19 CFR10.1015 ; GN33(g)
역내가치기준(RVC) 계산 방법	직접법(Build-Up, BU), ¹⁾ 공제법(Build-Down, BD), 순원가법(Net-Cost, NC)
자동차에 대한 특별 규정	RVC는 NC, BU, BD 가능; 19 CFR10.1015(d); GN33(h)
비섬유 제품의 최소허용기준	조정 가치의 10%(제외 있음); 19 CFR 10.1018; GN33(e)
비섬유 제품 세트의 최소허용기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세트 조정가격의 15% 이내; GN 33(n)(iv); 19 CFR 10.1021

〈표 IV-2〉의 계속

재고 관리 방법	
대체 가능 상품 및 원재료	후입선출법(LIFO), 선입선출법(FIFO), 평균법,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GN 33(j)
청구 및 결정	
수입 후 청구	19 USC 1520(d); 19 CFR 10.1010-10.1012
조정 청구	78 FR 27984, 2013년 5월 13일
수출자에게 전달된 결정 사항	수출자와 서신이 있는 경우
행동 강령 조항	19 CFR 10.1029

주: 1) 직접법인 경우 간접재료는 계산하지 않음

자료: U.S. CBP, "Korea FTA Summary," <https://www.cbp.gov/document/guidance/korea-fta-summary>, 검색일자: 2025. 6. 16.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원산지 상품)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상품이란 GN 33에 명시된 원산지 규칙과 협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¹¹⁸⁾
- (i)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한국, 미국 또는 양국 모두)의 영토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ii)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자 중 하나 이상의 영토에서 생산되며
 - (a)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GN 33(o)항)에 명시된 세번 변경을 거치거나 또는
 - (b)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GN 33(o)항)에 명시된 기타 적용 가능한 역내 부가가치율 또는 다른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iii)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영토에서 상기 규정한 (i) 또는 (ii)항의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검증 방식)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직접 검증'(섬유 및 의류는 간접 또는 공동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미국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검증함¹¹⁹⁾

118)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General Note 33(a),(b)

- 미국의 경우 직접 검증 방식을 통해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검증 대상자를 조사함으로써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영업 비밀서류 등을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검증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무역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¹²⁰⁾
 - 다만 섬유 및 의류제품은 제조 공정별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예: 원사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을 위해 현지 공정을 확인해야 하고, 우회 수출 가능성¹²¹⁾이 높아 예외적으로 간접 검증 방식으로 조사함
- (검증 방법)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국이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¹²²⁾
- 수입 당사국은 다음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또는 질의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섬유·의류 상품은 ‘섬유 또는 의류에 대한 세관 협력(협정 4.3조)’의 절차
 -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 서면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절차) 미국 세관은 우선 서면 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CBP Form 28)를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을 함¹²³⁾
- 특히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등의 문구를 통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한 안내’라는 내용이 포함됨

119)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apply/con/1/3/>, 검색일자: 2025. 6. 4.

120) 관세청·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121) 섬유·의류상품은 세이프가드, 쿼터 회피 등의 목적으로 우회 수출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비특혜 수출품을 포함하여 원산지검증 및 정보 제공 등 세관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대미수출품 생산 관련 기업에 한하여 연례 제공하도록 함(관세청·관계부처합동, 2017, p. 46.).

12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및 제4.3조

123) 상동

-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통지서 (Notice of Action, CBP Form 29)를 통하여 결과를 통지함¹²⁴⁾
 -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사국은 결과 통지서(CBP Form 29)를 통해 긍정적인 결정을 통보함
 - 원산지 충족에 이상이 없을 시 전화로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음¹²⁵⁾

- 검증 결과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해당 취지의 예비 결정 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함¹²⁶⁾
 - 예비 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 그대로 확정됨¹²⁷⁾
 - 예비 결정 후 재검토한 결과 원산지 충족 및 불충족 여부를 최종 결정함¹²⁸⁾
 - 추가 정보 제출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후 검증 수행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함

124) 상동


125) 상동

1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제4항

12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apply/con/1/3/>, 검색일자: 2025. 6. 4.

1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제4항

[그림 IV-1] 정보 제공 요청서(CBP-Form 2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CONTROL NUMBER: 1561-0023 EXPIRATION DATE: 8/31/2025
Date of Request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Manufacturer/Seller/Shipper	Carrier	Entry No.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Invoice No.	HTSUS Item No.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CBP Broker Company Name	Broker Filer Code/Number
TO: Name: _____ Last Name First Name M.I. Street 1: _____ Street 2: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		FROM: Street 1: _____ Street 2: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Port _____ Date Information Furnished _____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E. See item below.		
CBP Officer Message		
Reply Message (If more space is needed, see continuation on page 2.)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_____ Last Name First Name M.I. Signature _____ Telephone No. _____ Date _____
CBP Official _____ Fax No. _____	Team Designation _____ Email _____	Telephone No. _____

주: CBP Form 28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장만 발췌함
 자료: U.S. CBP, <https://www.cbp.gov/document/forms/cbp-form-28-request-information>,
 검색일자: 2025. 6. 12.

[그림 IV-2] 결과통지서(CBP-Form 2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i>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i>		1. DATE OF THIS NOTICE
19 CFR 152.2				
2. CARRIE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5. ENTRY NO.	
6. MFR/SELLER/SHIPPER	7. COUNTRY	8. CUSTOMS BROKER AND FILE NO.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10. TO		11. FROM		
<p>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p> <p><input type="checkbox"/> IS PROPOSED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p> <p><input type="checkbox"/> HAS BEEN TAKEN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p>				
<p>TYPE OF ACTION</p> <p>A. <input type="checkbox"/> RATE ADVANCE</p> <p>B. <input type="checkbox"/> VALUE ADVANCE</p> <p>C. <input type="checkbox"/> EXCESS <input type="checkbox"/>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p> <p>D. <input type="checkbox"/> OTHER (See below)</p>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14. CUSTOMS OFFICER (Print or Type)		15. TEAM DESIGNATION		16. TELEPHONE

CBP FORM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apply/con/1/3/>, 검색일자: 2025. 6. 12.

- 특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과세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¹²⁹⁾
 - 최종 확정 이후의 구제 조치는 정산 종료 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수입 관련 의무) 수입자는 특혜 신청의 유효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¹³⁰⁾
 -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의 원산지 소명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제조 공정을 설명하는 제조 공정도, 기술 사양 및 기타 문서
 - 상품이 일반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방식의 설명
 - 재료의 HS code, 원산지, 가격(부가가치기준의 경우)을 나타내는 재료 명세서
 -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원산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등
 - 거래내역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구매 증빙서류
 - 재고관리 방법, 간접 자재 등과 관련된 문서 등
 - 생산자가 사업상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위해 CBP에 직접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입자는 여전히 서류 제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CBP는 당사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 상태 및 자료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는 특혜관세 대우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신청을 하였음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할 수 없음¹³¹⁾
 - 수입자가 해당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및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입자가 해당 신청이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129)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apply/con/1/3/>, 검색일자: 2025. 6. 4.

130) U.S. CBP, <https://www.cbp.gov/trade/free-trade-agreements/korea/korus-implementation-instructions>, 검색일자: 2025. 6. 12.

13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

- (수출 관련 의무) 당사국은 수출과 관련하여 다음을 규정함¹³²⁾
-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의 수출자·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 수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자국의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에는 수입 관련 허위 진술 및 표시를 한 자국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벌칙을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함
 - 자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명이 부정확한 경우 수출자 등은 그 증명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해 증명을 제공한 모든 이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해야 함
 -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등이 증명을 받은 모든 자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 등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음
- (제재) 당사국은 수입자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모든 동일 물품의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¹³³⁾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기록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등이 수입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 검증을 통하여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증명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등이 요건을 준수할 때까지 이후 증명 등의 대상이 되는 동일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음¹³⁴⁾

13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20조

13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제3항

13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제6항

-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검증) 미국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섬유 또는 의류에 대한 세관 협력(협정 4.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경우 수입국이 수출국에 요청하는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의 관세 당국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검증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그 검증이 수행될 동안 규정상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¹³⁵⁾
 - 검증 요청이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경우는 검증 대상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수입통관 정산¹³⁶⁾ 중지
 - 원산지검증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수입통관 정산 중지
 - 재무부 장관이 12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정보 취득 시까지 또는 그보다 짧은 기한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날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¹³⁷⁾
 - 또한 체약상대국이 해당 협정에 따라 검증을 요청할 경우, 재무부 장관은 그 당사국 정부가 다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섬유·의류 상품 또는 그 생산에 대해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¹³⁸⁾
 -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해당 협정상 원산지 신청이 사실과 같음
 - 미국에서 출발하여 요청국으로 섬유·의류 상품을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미국 소재 수입자, 생산자 등이 관련 관세 법령·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함

135)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207(a)

136) 정산(liquidation)은 미국 통관의 마지막 단계로, 물품의 통관 여부와 관세, 제세 및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함(CBP,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855?language=en_US;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137)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207(a)

138)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207(g)

2. EU

가. EU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EU의 원산지 규정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구분¹³⁹⁾하여 모두 「EU 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¹⁴⁰⁾에서 규정하고 있음
 - 「EU 관세법」은 원산지 규정 및 일반 통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원국의 관할 관세청에서 개별 국가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⁴¹⁾
 - 특혜 원산지는 관세법에서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 즉 원칙만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내용 등은 각 협정별로 별도 구성함¹⁴²⁾
 - 비특혜 원산지는 관세법에서 원산지의 일반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이나 시행에 관해서는 「관세법 위임법(UCC Delegated Acts, UCC DA)」 및 「관세법 시행법(Implementing Acts, UCC IA)」에서 규정함
 - UCC DA는 원산지 기준을, UCC IA는 원산지 증명과 검증에 대해 규정함¹⁴³⁾
 -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이하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의 제2장에서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증명과 검증에 대해 구분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 IV-3>과 같음

139) UCC 제2장 상품의 원산지에서는 Section 1에서 비특혜 원산지를, Section 2에서는 특혜 원산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40) Regulation (EU) No 952/2013

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59.

142) 상동

143) UCC 제62조, UCC 제63조

〈표 Ⅳ-3〉 EU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EU 관세법(UCC)	시행 규정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4조: 상품의 특혜 원산지 • 제65조: 권한의 위임 • 제66조: 이행 권한의 허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제61조~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1조: 공급자 신고서(원산지확인서) - 제62조: 장기공급자(Long-term)신고서 (포괄원산지확인서) - 제63조: 공급자 신고서 수행 - 제64조: 정보증명서(INF4) 발급 - 제65조: 회원국 간 행정 협력 - 제66조: 공급자 신고서 검증 - 제67조: 인증수출자 인증 - 제68조: GSP 외 수출자 등록(REX) - 제69조: 특혜 원산지증명서 대체 • GSP 특혜 관련(제70조~제112조) • 기타 일반 특혜 관련(제113조~제126조)
비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9조: 적용 범위 • 제60조: 원산지 취득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 제61조: 원산지 증명 • 제62조: 권한의 위임 • 제63조: 이행 권한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7조: 비특혜 수입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 제58조: 비특혜 수입 조치와 관련된 행정 협력에 관한 정보 제공 • 제59조: 비특혜 수입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후속 검증
특혜/비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7조: 위원회가 취한 조치 (특정 물품 원산지의 판정) • 제68조: 이행권한의 허여(제285조 4항에 따른 검사 절차에서 이행법 채택) 	-

자료: 저자 작성

□ (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세율 또는 비관세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¹⁴⁴⁾

- FTA와 같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 원산지 규정은 해당 협정에서 규정함
 - 「관세법」에서는 특혜 원산지의 원산지 인정 근거만을 규정함
 - 단 EU는 협정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의 이행법률 제정 절차를 취하지 않고, 협정이 국내 일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을 마련함¹⁴⁵⁾

144) UCC 제64조

- 동 시행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칙과 관련하여 EU 내의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협정 내 포괄적 규정의 부재로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행정 협력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¹⁴⁶⁾
- GSP 등 일반 특혜 원산지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등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함
 - 해당 규정은 상품이 전적으로 얻어진 것 또는 충분한 가공 및 공정을 통해 제조된 것이라는 기준에 근거함¹⁴⁷⁾
- 비특혜 원산지 증명의 제공 및 검증은 「관세법」 제285조 제4항~제5항 및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에서 규정된 심사 절차에 따름¹⁴⁸⁾
 - 관세 당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 또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접수 후 무작위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진위성 및 정확성 모두를 검증하도록 요청해야 함¹⁴⁹⁾
 - 요청받은 기관 등은 가능한 한 빨리 검증 결과를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비특혜 수입 조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전심사) EU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¹⁵⁰⁾
- 또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상 특혜 원산지의 검증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정보 증명서(Information Certificate, INF 4)¹⁵¹⁾ 발급과 공급자의 원산지신고서

145)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 118.

14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58조

147) UCC 제64조 제3항

148) UCC 제68조

149)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58조

15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18조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함¹⁵²⁾

- 세관 당국은 수출자, 무역 거래자에게 공급자 신고서의 정확성과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자로부터 INF 4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세관 당국은 필요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출자 등이 세관 당국의 요청 후 120일 이내에 INF 4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세관 당국은 공급자의 세관 당국에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출국 세관 당국은 공급자 신고가 이루어진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와 서류를 보내야 함
 - 공급자 신고가 이루어진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공급자에게 증거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검증을 요청한 세관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검증 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세관 당국은 공급자 신고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을 무효화할 수 있음
- EU의 특혜 원산지의 경우 통일된 표준 규범인 Pan-Euro System을 확립하여 1997년 이후로 유럽과 체결한 모든 FTA에는 Pan-Euro System을 반영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함¹⁵³⁾
 - Pan-Euro System의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FTA 협상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하며,¹⁵⁴⁾
 -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EU FTA와 한-EFTA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일부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 등은 해당 시스템을 반영함

151) INF 4(정보증명서)는 EU 내 원산지증빙서류로, 공급자 신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EU의 관세 당국이 발행하는 서류이며, INF 4는 신청서와 증명서로 구성되고 신청은 EU 내 구매자 또는 세관에서 할 수 있음(Irish Tax and Customs Revenue, <https://www.revenue.ie/en/customs/business/origin/preferential-nonpreferential/suppliers-declaration.aspx>, 검색일자: 2025. 7. 2.)

15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64조, 제66조

1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65.

154) 상동

〈표 IV-4〉 EU의 Pan-Euro 원산지 규정의 구성 체계

구분	내용
Title I	정의 규정(제1조 정의)
Title II	원산지물품의 정의 규정(제2조 내지 제11조) - 일반조건, 누적조항, 완전획득, 충분한 공정 및 가공, 불충분공정, 적용단위, 약세사리, 잔여부품 및 도구, 센트, 중립재 등
Title III	영역 요건(제12조 내지 제14조) - 영역원칙, 직접운송, 전시회
Title IV	관세환급 및 면제(제15조)
Title V	원산지 증명(제16조 내지 제31조) - 일반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회계분리, 인증수출자, 분할 수입,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지원서류, 불일치 및 오류 등
Title VI	행정 협력(제32조 내지 제36조) - 상호 협조, 원산지증명서의 검사, 분쟁해결, 형벌 및 벌금, 자유지역 등
Title VII	Ceuta and Melina(제37조 내지 제38조)
Title VIII	최종 규정(제39조 내지 제40조) - 원산지 규정 수정,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등

자료: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체결 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 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p.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67.

- 또한 EU는 FTA 원산지검증과 별개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원산지검증을 EU 집행위원회 산하 부정부패 감독기구인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에서 주관하여 실시함¹⁵⁵⁾
 -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수행되나, EU 공동체 전체의 재정적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관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정보가 있는 경우 개별 회원 국가는 OLAF에 이를 통보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검증을 실시함¹⁵⁶⁾
 - OLAF는 EU를 대신하여 관세 사기(원산지·과세가격·품목분류 허위 신고 및 반덤핑 관세 등 관세 포탈 행위와 물품 밀수 포함)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및 검증을 실시 하며 세관 당국과 협력 지원함¹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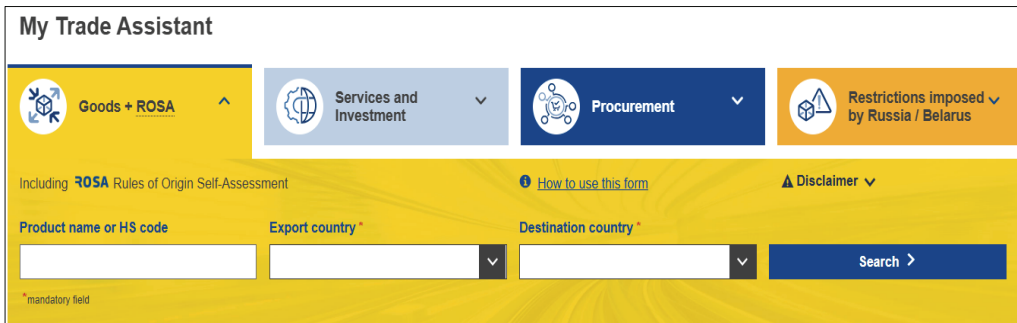
155) 김만길·정재완, 2013, pp. 267~286.

156) 상동

157) OLAF, "Customs fraud," <https://anti-fraud.ec.europa.eu/policy/policies-prevent-and-dete>

- 추가로 EU는 ‘원산지 규정 자체 평가 도구(Rules of Origin Self-Assessment, ROSA)¹⁵⁸⁾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품이 특정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¹⁵⁹⁾
- ROSA에 수입 물품의 정보를 기입 시 관련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자체 판정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 관련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음

[그림 IV-3] ROSA(원산지 규정 자체 평가 도구) 화면



자료: EU, “Access2Market,”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my-trade-assistant>, 검색일자: 2025. 6. 30.

나.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검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국 FTA 관련 법령상 검증 절차에 따름¹⁶⁰⁾

r-fraud/customs-fraud_en, 검색일자: 2025. 6. 30.

158) ROSA는 특정 무역협정에서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전반을 기업에 안내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 자사 제품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즉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임(EU,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how-use-rules-origin-self-assessment-tool-rosa>, 검색일자: 2025. 6. 30.).

159) EU, “Quick guide to working with rules of origin,”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quick-guide-working-rules-origin>, 검색일자: 2025. 6. 30.

160) 대한상공회의소, 2024, p. 18.

- (원산지 상품) 한-EU FTA에서는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을 원산지로 간주함¹⁶¹⁾
 -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제품 - 다만 그러한 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함
 -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한 제품

-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 수입 절차 수행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음¹⁶²⁾
 -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해당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는 않음

- (검증 대상) 사후 검증은 무작위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및 한-EU FTA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됨¹⁶³⁾

- (검증 방식) 한-EU의 경우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시 수출국이 검증을 하는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의해 수행되며,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¹⁶⁴⁾

16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

162)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

16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164) 상동

-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공동 조사를 위해 ‘세관 분야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를 원용함¹⁶⁵⁾
 -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다른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수행함
 - 간접 검증과는 별도로 상호지원 의정서에 의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국 공무원은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설정된 조건 하에 피요청 당국의 사무실 등을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

- (절차)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원산지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함¹⁶⁶⁾
 -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함
 -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됨
 -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조사 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아야 함¹⁶⁷⁾
 - 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제품이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함

-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 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됨¹⁶⁸⁾

165) 「한-EU FTA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166)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167) 상동

- (제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함¹⁶⁹⁾

3. 중국

가. 중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중국의 원산지 규정은 「대외무역법」, 「세(해)관법」을 최상위법으로 함¹⁷⁰⁾
- 「대외무역법」 제22조는 원산지 관리 방법에 관해, 「세관법」 제41조는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에 대해 규정함
- 「세관법」 제41조는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는 원산지 관련 규칙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라고 규정함

〈표 IV-5〉 중국의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법률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수출입 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규정 •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 규정 • 중·마카오 CEPA 원산지 규정 • 중·홍콩 CEPA 원산지 규정 • 중·ASEAN FTA 원산지 규정 • 중·칠레 FTA 원산지 규정 • 중·파키스탄 FTA 원산지 규정

168) 상동

169) 상동

1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중국편』, 2018, p. 71.

〈표 IV-5〉의 계속

구분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싱가포르 FTA 원산지 규정 •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 규정 • 중·페루 FTA 원산지 규정 • 중·코스타리카 FTA 원산지 규정 • 중·스위스 FTA 원산지 규정 • 중·아이슬란드 FTA 원산지 규정 • 중·한국 FTA 원산지 규정 • 중·니카라과 FTA 원산지 규정 • RCEP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규정 등
비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해(세)관법 - 제4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 •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 - 원산지 판정기준(조례 제3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신고 및 심사(제11조~제21조) -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제22조~제25조) • 원산지표기관리규정 - 원산지표시의 사용 범위(규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의 정의(규정 제4조) 및 대상 품목(규정 실시방법 제5조) - 지역 표시의 정의(규정 제4조) 및 대상 품목(규정 실시방법 제6조) - 원산지표기에 대한 등기인증제도(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요건(동 규정 제14조) 등 • 수입 재료를 포함한 수출 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 가공공정명세표 • 해(세)관행정처벌시행조례 - 원산지 규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자료: 박광서 외, 2014, p. 101.을 바탕으로 저자 재편집

- 특혜 원산지 규정은 별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관리 규정 (이하 특혜 원산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협정, 국제 조약 등에 따름¹⁷¹⁾
- 「특혜 원산지관리 규정」은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세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를 근거로 제정됨¹⁷²⁾
- 구체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 등은 중국이 체결한 각 협정별 관련 규정에 의해 규정 하나, FTA 관련 내용은 해당 FTA에 근거한 시행세칙을 마련함¹⁷³⁾

171) 박광서 외, 2014. p. 101.

172)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1조

- 한-중 FTA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국 세관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이하 중·한국 FTA 원산지 규정)」에 따름

- 비특혜 원산지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를 근거로 함
 -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는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각종 무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¹⁷⁴⁾
 - 동 조례는 최혜국 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원산지 표시 관리 등 비특혜 무역 조치와 정부 조달, 무역 통계 등에서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나, 특혜 무역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음¹⁷⁵⁾

1) 특혜 원산지 규정

- 특혜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세관 행정은 「특혜 원산지관리 규정」에 따름¹⁷⁶⁾
- 특혜 무역협정의 회원국 또는 지역(이하 회원국 등)에서 수입을 위해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다음의 경우 해당 회원국 등을 원산지로 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함¹⁷⁷⁾
 - 회원국 등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것¹⁷⁸⁾
 - 회원국 등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되지 않았으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이 경우 원산지는 관련 특혜 무역협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또는 기타 기준(만장일치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됨¹⁷⁹⁾

1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중국편』, 2018, p. 72.

174) 상동

175)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조

176)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2조

177)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3조

178)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4조

179)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5조

-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은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¹⁸⁰⁾
 - 세관 총서는 인증기관이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지를 감독 및 검사함
 - 인증기관은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 총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하 수입자 등)은 수입 신고할 때 세관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화물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특혜 세율을 적용함을 신고 하며 관련 원산지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¹⁸¹⁾
 - 수입자 등이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특혜 무역협정의 회원국 등에서 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충하여 신고해야 함
 - 수입자 등이 보충 신고한 경우 세관은 신청에 의해 약정된 특혜 세율에 따라 상당액의 보증금을 징수한 후 수입통관 처리를 할 수 있음

- 세관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 서류와 물품 원산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 규정」에 따름¹⁸²⁾
 - 세관은 필요한 경우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도록 수출 회원국 등의 주무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세관은 관련 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방문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세관은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음
 - 특혜 무역협정 회원국 등의 요청에 따라 세관은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협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검증 결과에 대해 회신해야 함

180)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11조~제13조

181)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14조~제17조

182)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19조~제20조, 제22조~제26조

- 수입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 심판 관리 잠정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행정 심판을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세관 규칙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해 구속력 있는 원산지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수입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 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¹⁸³⁾ 동 규정 및 「세관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상기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관법」 및 「세관행정처벌 실시 조례」에 따라 처벌함¹⁸⁴⁾
 - 수입자 등이 수입신고 시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 물품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보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입자 등이 상업 송장, 운송 서류 등 기타 상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검증 결과 물품의 원산지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진정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이 규정 및 관련 특혜 무역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함¹⁸⁵⁾
 -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에서 획득한 물품은 해당국을 원산지로 함
 - 실질적변형기준은 제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실질적변형기준으로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세번변경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보충 기준으로 함¹⁸⁶⁾

183)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21조

184) 「수출입물품 특혜 원산지 관리 규정」 제27조

185)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3조 및 제5조

- 수입 물품의 수입통관 시 「세관법」과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의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함
 - 세관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시 수입 상품의 수하인으로부터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관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¹⁸⁷⁾

- 수출의 경우 수출자 등은 세관 및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지역 지회에 수출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¹⁸⁸⁾
 - 세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입국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출 상품의 원산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적시에 수입국 관련기관에 알려야 함¹⁸⁹⁾

- 원산지 신고 위반 등의 경우 「대외무역법」, 「세관법」 및 「세관행정처벌 실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¹⁹⁰⁾
 - 원산지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원산지 증명을 위조, 변조, 매매, 절도의 경우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¹⁹¹⁾
 - 수출 화물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취득 등을 한 경우 화물 가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화물 가치가 5천위안 이하인 경우 5천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함¹⁹²⁾
 - 또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함

186)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6조,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187)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4조

188)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질검총국(AQSIQ)의 검사 등이 해관총서(GACC)로 이관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도 변경되었으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계속 수행함(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ftaaecenter/221346993860>, 검색일자: 2025. 6. 23.).

189)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0조

190)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2조

191)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3조

192) 불법 소득은 몰수하며, 범죄 성립 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23조).

나.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2025년에는 한-중 FTA 제10차~제12차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개최됨
 - 또한 중국은 2022년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특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RCEP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상품) 한-중 FTA상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중 별도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¹⁹³⁾
 -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판독 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 등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세 당국의 요청일로부터 5 근무일 이상~30 근무일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¹⁹⁴⁾

- (검증 대상)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차례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¹⁹⁵⁾
 - 수입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상품의 원산지검증 요청

19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조

19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1조

19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 검증 요청
 -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 (검증 방식) 한-중 FTA는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 검증을 채택하고 있음¹⁹⁶⁾
-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시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 요청 이유와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함
 - 수출국 관세 당국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검증 결과와 수출자 및 생산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함
 - 수입국 관세 당국은 수출국 관세 당국의 검증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의 결과를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함
- (현장 검증 절차)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 당국의 동의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을 수출국 세관 직원이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음¹⁹⁷⁾
-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검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방문 검증 의도의 서면 요청을 전달해야 하며, 수출국 관세 당국은 수락 여부를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
 - 방문 검증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된 방문 검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 검증 승인과 함께 수입국에 통보해야 함
 - 검증 개시 전 검증 사안은 양 관세 당국 간에 상호 논의하며, 방문 검증 과정에서 수입국 관세 당국의 모든 요청은 수출국 관세 당국을 통하여 이루어짐
 - 수입국 관세 당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정과 방문 검증 결과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 및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19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19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 수출자 등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수입국 관세 당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의견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에 관한 최종 판정을 수출국 관세 당국과 수입자에게 서면 통보함
 - 실제 방문부터 최종 판정까지 방문 검증 절차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수행함
-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음¹⁹⁸⁾
- 다만 해당 상품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사기 혐의가 없는 경우는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제재) 수입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¹⁹⁹⁾
- 수입자가 요청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못한 경우
 -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된 검증 결과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수출국 관세 당국이 방문 검증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관세 당국이 방문 검증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4. 베트남

가. 베트남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베트남은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법(이하 대외무역관리법)」과 시행령에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칙과 물품의 원산지 증명에 대해 규정함²⁰⁰⁾

19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19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3조

200)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3조

- 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 및 비관세 약정이나 협정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임
 -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이외의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며, 최혜국 대우, 무역 통계 등 비특혜적 무역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름
 - 베트남의 「대외무역관리법」상 원산지란 (i) 전체 상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이거나 (ii) 많은 국가 또는 지역이 상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품의 최종 기본 가공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제 조약에 따른 특혜 원산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우대 관세 및 비관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과 이러한 국제 조약을 규정하는 산업통상부 규정에 따라 적용됨²⁰¹⁾
 - 일반특혜관세(GSP) 및 기타 일방적 특혜를 적용하기 위한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은 해당 특혜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규칙과 해당 규칙을 제정하는 산업통상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²⁰²⁾
- (비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됨²⁰³⁾
- 상품의 전체가 한 국가나 지역에서 전적으로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는 그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함
 - 상품이 많은 국가 또는 지역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품의 최종 기본 가공 단계가 수행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며, 실질적변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간주함
 -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며,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은 추가 또는 보충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201)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4조

202)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5조

203)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 (원산지 자가 인증)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이 서명 또는 가입한 국제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입국의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 규정'에 따라 거래자 선정 기준, 원산지 자체 인증 절차 및 거래자의 의무와 책임, 수출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에 대한 거래자의 확인 및 검증 절차, 위반 사항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⁰⁴⁾
- (원산지 검사 및 확인) 관세 당국은 무역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 자가 인증을 하기 전 또는 후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함²⁰⁵⁾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위임 기관, 수입국 세관 등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를 자체 인증한 무역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함
 - 서면 검증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무역업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검증함
 - 관련 국내 기관 및 수입국의 조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산지를 검증함
 - 수출 물품의 경우 수출 절차 중 수출자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물품이 정확한 원산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 중 수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함
 - 무작위 또는 원산지 정보의 진위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 당국 및 유관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서류의 확인을 요청함
 - 수출국 세관 등의 원산지검증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약 및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국 무역업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조정을 요청해야 함
-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정) 세관은 수출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검사하고 통관 서류와 물품의 실물 검사 결과를 기초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정해야 함²⁰⁶⁾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수출자가 허가한 경우라도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해

204)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25조

205)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28조

206) 「베트남 관세법」 제27조,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24조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신청자가 수출자나 제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 신고를 요청하고 해당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만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 및 물품 제조공장의 현장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세관은 수출 물품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우선 요구하고, 이후 생산 현장에서 원산지를 검사 및 검증하여야 함

○ 원산지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출 물품의 관세법에서 규정된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정) 세관은 수입자의 신고 내용, 원산지 증명 서류, 통관 서류 및 물품의 실물 검사를 통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및 확인해야 함²⁰⁷⁾

○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하거나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협약에 따라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함

○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은 국제 협약에 따라 물품의 생산국에서 물품의 원산지 검사를 진행하고 검증하여야 함

- 상대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검사 이유 등을 통보해야 함

- 원산지 확인 결과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정 시 법적으로 유효함

○ 수입 물품의 원산지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세법」에 따라 통관은 가능하나 특혜 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부 세액은 물품의 원산지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됨

□ (사전심사) 신고인이 수출입 예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품목번호, 과세가격의 사전 확정을 세관에 요청하는 경우 세관은 사전 확정을 할 수 있음²⁰⁸⁾

○ 신고인은 물품 정보, 관련 증명서, 견본(또는 기술자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함

207) 「베트남 관세법」 제27조

208) 「베트남 관세법」 제28조

- 세관은 신고인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근거로 사전 확정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 확정을 위한 근거 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세관은 보완을 요청함
 - 사전 확정 결과 통보 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기한 내 신고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전 확정 결과는 실제로 제품이 수출입될 때 세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제재) 베트남의 경우 무역업체가 원산지와 관련한 의무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짐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은 원산지 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간 동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²⁰⁹⁾ 조치를 취해야 함²¹⁰⁾
 -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관련 없는 정보 등을 전자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시스템 또는 발급기관의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간
 - 원산지증명서 요청 시 위조문서 사용 및 사기 신고를 발견한 날부터 6개월간
 - 사후 검증 시 협조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간
 - 발급 신청자가 원산지 결정의 책임 및 서류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급기관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무역업자의 명칭을 발급 장소에 공시해야 함

나. 베트남과의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

- 베트남과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한-베트남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의 교역을

209) 또한 위험관리시스템에 적색 채널을 적용하고 산업통상부 전자정보 포털(www.moti.gov.vn)에 게시해야 함(「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29조).

210)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제29조

강화하였으며, 2022년 2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 한국이 가입한 RCEP가 발효되었음

〈표 Ⅳ-6〉 한-베트남의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

구분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C/O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 서식[Form AKI])	기관발급(통일 서식) 자율발급(논의 가능)	기관발급(당사국 협의 양식) 자율발급(순차적 도입)
C/O 제출면제	FOB 200달러 이하	FOB 600달러 이하	관세 가격 200달러 이하,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 요건 면제 상품
서류보관	C/O 발급일부터 3년 이상	C/O 발급일부터 5년 이상	C/O 발급일부터 3년 이상
검증 방식	검증 방식/주체 간접 검증 - 한국: 수출국 세관 - 아세안: 세관(예외의 경우 직접 검증)	간접 검증 - 한국: 세관 - 베트남: 발급기관(예외의 경우 직접 검증)	간접 검증 - 수출국 C/O 발급기관 직접 검증 ¹⁾ - 수입국 세관
	회신 기간 2개월 내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6개월 내 연장 가능)	6개월 내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서면 요청) 30~90일
	검증 기간 6개월 이내 완료	10개월 이내 완료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180일 내 결정
제재	미회신 시 협정관세 제한		

주: 1) 수입국 방문 검증은 수출 발급기관 및 당국의 서면 추가 정보 요청 이후에만 수행됨
 자료: 관세청중합솔루션, 「FTA 한눈에 보기」,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0342&cntntsId=5100>, 검색일자: 2025. 6. 26.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검증

- (원산지 상품)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음²¹¹⁾
 -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그 상품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211)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제2조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 누적 기준을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처리)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수입 절차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서류가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안 됨²¹²⁾
-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 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 (간접 검증) 수입국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및 해당 상품, 그 상품의 특정 부분 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는 수출국의 발급기관에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²¹³⁾
- 검증요청이 있으면 수출국 관세 당국²¹⁴⁾은 특정한 수출일²¹⁵⁾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가 소명서에 대한 사후 검증을 수행함
 -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전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 상품의 원산지 관련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입국 요청에 의한 검증의 경우는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이유와 동 증명서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정보를 명시해야 함
-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함

212)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2조

213)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214) 한국의 경우 언급된 '발급기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검증 목적상 그 관세 법령에 따른 관세 당국을 의미함(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각주).

215) 6개월 이내의 기간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발급기관은 특정일 전후 또는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사이의 6개월의 기간을 선정할 수 있음(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각주).

- 검증 결과를 전달받은 후 수입국은 대상 상품의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결정 결과를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함
-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 전까지 특혜관세 대우 부여를 보류할 수 있으나, 상품이 수입 금지·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경우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음²¹⁶⁾
- (현장 검증)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²¹⁷⁾
 - 검증 방문 전 수입국은 검증 방문 수행 의사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함
 -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검증 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 발급기관
 - 검증 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 세관 당국
 - 검증 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 수입국은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할 수 있음
 - 통보받은 발급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증 방문 연기를 회신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 방문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함
-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수출자 및 생산자,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함²¹⁸⁾

216)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217)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218)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 보류되었던 특혜관세 대우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결정서에 따라 복원됨
 - 수출자 등은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원산지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함
 - 실제 방문과 결과 통보를 포함한 검증 방문 절차는 검증 방문 개시일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음²¹⁹⁾

2) 한-베트남 FTA상 원산지검증

- (원산지 상품) 한-베트남 FTA 협정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²²⁰⁾
-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경우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 특정 상품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해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특정 물품의 취급(부속서 3-나)의 규정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 누적 기준을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19)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

220)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1조

-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처리)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수입 절차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서류가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진 않음²²¹⁾
 - 사소한 오류 발견 시 수입국 관세 당국은 해당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보함
 -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 다수의 품목 신고 시, 품목 중 하나에서 발생한 문제로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 대우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본 또는 신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관세 당국은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음

- (간접 검증) 수입국은 무작위 또는 수입국이 서류의 진정성이나 해당 상품 및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²²²⁾
 - 수입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국 관세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함
 -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사후 검증 요청 전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증이 수입국의 요청인 경우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수반하고 그 이유와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해야 함
 -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은 신속하게 그 요청에 응답하고 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함
 - 그러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상품의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수출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수입국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후 수입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
 - 사후 검증은 결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221)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19조

222)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1조

-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 전까지 특혜관세 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나, 상품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경우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음²²³⁾
- (현장 검증)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²²⁴⁾
 - 검증 방문 전 수입국은 검증 방문 수행 의사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함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검증 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 발급 당국 및 관세 당국
 - 검증 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 수입국은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해당 원산지 증명서상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통보받은 발급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증 방문 연기를 회신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 방문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함
-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함²²⁵⁾
 - 정지된 특혜관세 대우는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결정서에 따라 복원됨
 - 수출자 등은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특혜관세 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 제출하도록 허용됨
 -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서가 관련 관세 당국에 통지됨

223)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1조

224)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1조

225)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1조

- 최초 검증 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실제 방문과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 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는 관련 관세 당국에 통보됨
-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음²²⁶⁾

3) RCEP상 원산지검증

- RCEP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해서는 협정문 제3.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 서술되는 내용이 많아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기 ‘〈표 IV-6〉 한-베트남의 협정별 원산지 규정 비교’를 참고 바람

5. 인도

가. 인도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인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등 국내 법령과 국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인도 관세법」은 인도의 전반적인 관세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인도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s, 1975)」 제5조는 ‘무역협정에 따른 낮은(특혜) 관세율 부과’에 대해 규정함

226)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2조

- 인도는 FTA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우려로 2020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였으며,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s, CAROTAR 2020)」을 도입함²²⁷⁾
 - 2020년 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인도 관세법」에 새로운 제5-AA장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과 제28DA절을 신설하면서 특혜 신청 수입자의 의무, 세관공무원의 검증 권한 등 원산지 규정을 강화함²²⁸⁾
 - 제28DA절은 총 11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산지검증, 특혜 우대 조치의 중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8DA절에 따라 수입자는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수준의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인도는 「CAROTAR 2020」을 통해 수입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 목록인 ‘Form I(원산지 입증 정보)²²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입자는 수입 전 해당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함²³⁰⁾
 -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은 협력국에 검증을 요청하기 전 우선 수입자에게 원산지 세부 사항을 요구해야 함
 - 현재 원산지검증 절차는 각국의 주요 관세 당국을 통해 진행되어 협정의 기한에 따라 시간이 걸리나, 수입자가 Form I 등 충분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면 협력국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동 규칙과 협정이 상충할 경우 수입자의 의무는 협정이 아닌 국내법에서 발생하며, 협정의 원산지 관련 조항은 「인도 관세율법」 제5조에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내법에 포함되므로 원산지 규정이 우선함²³¹⁾

227)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22조

228) CBIC, *Customs Rules 2020(CAROTAR 2020)*, 2020, pp. 4~5.; 관세청, 2020, p. 40.

229) Form I(원산지 입증 정보)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관세청,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보도자료, 2020. 9. 15.)

230) CBIC(The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Customs Rules 2020(CAROTAR 2020)*, 2020, pp. 4~5.; 관세청, 2020, p. 40.

231) CAROTAR 제8조 제3항에서는 상품 범위 내에서 원산지 규정이 우선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 또한 원산지검증 운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의 공무원 대상 회람 문서인 ‘Circular No. 37/2020-Customs’을 게시함으로써 상대국에 검증을 요청하기 전 물품 수입자에게 Form I 제출을 요청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²³²⁾

〈표 Ⅳ-7〉 인도의 원산지 관리 강화 법적 근거

구분	명칭	제정 주체	시행 일자	비고
법	The Customs ACT, 1962 - Chapter VAA 28DA	인도 정부	2020. 4. 1.	Amendment 방식
규칙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CAROTAR 2020	인도 재무부	2020. 9. 21. (2020. 8. 21. 게시)	Notification No. 81/2020-Customs (N.T.) ※ Form I 포함
회람 (지침)	Guidelin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section 28DA of the Customs Act, 1962 and CAROTAR, 2020 in respect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FTA/PTA/CECA/CEPA) and verification of Certificates of Origin-reg.	관세간접세 위원회 (CBIC)	2020. 8. 21. 게시 (관련 공무원 대상)	Circular No. 37/2020-Customs

자료: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2020, p. 39.

- 하지만 「CAROTAR 2020」로 인해 수입자들이 FTA 양허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도 정부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2024년 7월 「관세법」 제28DA절의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³³⁾
 - 원산지증명서가 ‘Certificate of Origin’에서 ‘Proof of Origin’으로 변경됨
 - 자기(자율) 발급(Self-Certification) 방식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겠다는 추세를 반영함
 - 이후 체결될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무역협정에 대비하기 위함

232) 관세청, 2020, p. 40.

233) 「인도 관세법」 제100조; KOTRA,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21195, 검색일자: 2025. 6. 30.

- 기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기관에만 한정되었으나, '무역협정에 따라 지정된 개인'도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그림 IV-4] Form I의 일부

Section II
(To be filled after filing of Bill of Entry)

(a) **Name of the importer:**

(b) **Bill of Entry (B/E) No. and Date:**

(c) **Customs Station where B/E was filed:**

(d) **Goods on which preferential rate of duty has been claimed:**

S.no.	Description	Classification (8 digit)

Section III
(This information should be possessed before import of goods)

Part A:

1. Briefly describe the production process undertaken in country of origin with respect to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 Also, state which of the originating criteria prescribed in the Rules of Origin has been claimed. For example, WO, RVC + CTH/CTSH or CTH or CC or RVC, etc.

[WO: Wholly Obtained; RVC: Regional Value Content; CTH: Change in Tariff Head; CTSH: Change in Tariff Sub-Head; CC: Change in Chapter]

Note 1: Where the good is claimed to be "Wholly Obtained", mention the process through which it is claimed to fall under this category. Each trade agreement lists out such processes under a specific rule and may vary from agreement to agreement.

Page 10 of 13

[그림 IV-4]의 계속

Examples:

- goods obtained by hunting or trapping within the land territory, or fishing or aquaculture conducted within the internal waters or within the territorial sea of the Party;
- goods produced on board factory ships from the goods referred to in preceding paragraph, provided that such factory ships are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and fly its flag.

Note 2: If the goods are not wholly obtained, the manufacturing/processing undertaken in country of origin must be ascertained.

Description of goods	Production process	Originating Criterion
1.		
2.		

Part B:

(To be filled if originating criteria is NOT wholly obtained, for each of such good under import, on separate sheets)

1. Stat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originating material or component used in production of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If no originating material/components were used, same should be indicated as "None".

Description of good under import and its classification (8 digit):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	Whether manufactured by producer of final good	Whether procured by producer locally from a third party	In case procured from third party, did producer of final good seek conformation and documentary proof of origin of these component?
	(Yes/No)	(Yes/No)	(Yes/No)
1.			
2.			

Page 11 of 13

주: Form I은 총 3절(Se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은 Guidance이므로 생략함
 자료: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Notification No. 81/2020-Customs)」

나. 한-인도 CEPA상 원산지검증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신흥 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음²³⁴⁾
-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수입통관을 위해 당사국 관세 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해서는 안 됨²³⁵⁾

1)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²³⁶⁾

-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상품 및 상품의 특정 부품에 관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후 검증요청 전 수입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무작위 검증을 제외하고 검증 요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하며, 그 사유와 특정 사항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추가 정보를 명시해야 함
 - 관세 당국은 신속히 요청에 응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함
 - 수입국 관세 당국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나, 상품이 수입 금지·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수반하여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음

234)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ftamain/kfta/lov5/in/1/1/>, 검색 일자: 2025. 6. 26.

235)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7조

236)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11조

- 관세 당국은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수입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
 - 결정 결과를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 검증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검증²³⁷⁾

- 수입국 관세 당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로 예외적 상황에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짐

- (서면 검증)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음
 - 서면 검증 시 서면 요구서 또는 질문서에는 회신 기한이 수령한 날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임을 적시해야 함
 - 관세 당국이 작성된 질의서 또는 정보, 서류를 접수하고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출자 등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자 등이 기간 내에 질의서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은 검증 완료 전 수출자 등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보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

237)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12조

- (현장 검증)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을 할 수 있음
- 검증 방문 수행 전 수입 당사국은 수행 의사를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검증 방문 내 당사국의 관세 당국 및 발급 기관, 수입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검증 방문 대상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음
 - 발급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 방문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동안 수행됨
 - 수출자 등은 검증 방문 과정에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할 수 있음
 -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의 생산자·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 발급기관에 그 대상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해야 함
 - 중지된 특혜관세 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됨
 - 수출자 등은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관세 대우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수출자 등으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서를 발급기관에 전달함
 - 검증 방문 수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 방문을 포함한 검증 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발급기관에 전달되어야 함
 - 어느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방문에 앞서 수입자에게 상대 당사국의 수출자 등이 제공한 서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수입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자 등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또는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는 근거로서 간주하지 않음

3)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²³⁸⁾

-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재료의 검증은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 관세 당국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관세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료를 비 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음
 - 기록에 대한 접근 거부
 - 검증 질문서에 대한 미회신
 - 방문 검증의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방문 동의 거부
 - 당사국은 방문 검증이 적용되어 방문 검증의 연기를 유일한 근거로 해서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지 않아야 함

- (특혜관세 배제) 별도로 규정을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음
 -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 수출자 등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서면으로 검증 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 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 당사국이 수입자 및 수출자,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 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²³⁹⁾을 적발하는 경우

238)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13조

239) '행위유형'이란 상품의 수출자·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적어도 2회 행한 경우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생산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 서면 결정서를 그 수출자·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송부한 것을 말함(「한-인도 CEPA 협정문」 제4.13조).

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국제 비교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들의 원산지 및 원산지검증에 관한 법 규정을 정리하면 협정 및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FTA와 같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이행 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규정을 국내 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인 미주형과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협정 자체를 법률과 동일시하는 유럽형으로 구분됨²⁴⁰⁾
 - 우리나라는 FTA의 이행을 위해 「FTA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원산지검증 및 조사와 관련하여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함
 - 미국 등은 FTA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FTA 이행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은 관세 법령 등에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EU 등은 FTA 협정 등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국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을 마련함
 - 대부분의 국가는 원산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FTA 협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FTA 협정의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절차 규정 등을 모두 국내법에 수용함

- 다만 주요국들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하여 각국의 관세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음

2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77.

- 특히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관세법」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 EU의 경우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 중국은 특혜 원산지에 대해서는 「세관법」, 「수출입 관세조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특혜 원산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비특혜 원산지의 구체적인 시행은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따름
 - 베트남은 「대외무역관리법」에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칙과 증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혜 원산지의 판정 등은 해당 국제 조약과 이를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함
 - 인도는 「인도 관세법」, 「인도 관세율법」에서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국들은 FTA의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FTA 협정에서 정한 검증 절차 외에도 각국에서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별 상호 관세 등의 적용으로 인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임²⁴¹⁾
 - 이러한 조치로 베트남, 태국 등도 대미 협상을 준비하면서 원산지검증을 강화하기로 함
 - 우리나라 관세청도 선제적으로 한-미 FTA 활용 수출품 중 원산지 위장 우려가 있는 품목군에 대한 원산지 기획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회 수출로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²⁴²⁾
 - EU의 경우 개별 회원국마다의 원산지검증뿐 아니라 EU 차원에서 OLAF를 통해 관세의 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 및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241) 『중앙일보』, 「제품의 족보까지 탈탈 튄다... '관세 장벽'만큼 높아지는 '원산지증명」, 2025. 4.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024>, 검색일자: 2025. 6. 17.

242) 『연합뉴스』, 「관세청, 대미 수출품 대상 'FTA 원산지' 기획 검증」, 2025. 3. 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5038500002?input=1195m>, 검색일자: 2025. 4. 7.

- 인도의 FTA 증가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CAROTAR 2020)」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시점에 원산지 정보가 기재된 Form I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FTA 협정별로 채택한 검증 방식에 따라 검증 주체와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입자를 조사하는 국내 검증을 우선으로 하며, 선 서면조사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국내 검증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에 대한 국제 검증을 시행함
 - 국제 검증 시에는 수출자에 대한 서류 검증과 현장 방문 검증(해외 현장 조사), 수출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 검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 미국은 수입국 과세당국이 수출자 등을 현지 조사 하는 직접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음
 - EU는 수출국 관세 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 검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도 공동 조사가 가능함
 - 중국, 베트남, 인도의 경우는 우선 수출 당사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혼합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V-1〉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구분	미국	EU	중국	베트남	인도
검증 방법	직접검증 (섬유·의류는 간접/공동검증)	간접검증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검증 주체	수입국의 관세당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회신 주체	(직접) 수출자 등 (간접) 수출국세관	관세당국	(간접) 관세당국	(한) 관세당국 (베) 발급기관	(한) 세관 (인) 발급기관

〈표 V-1〉의 계속

구분	미국	EU	중국	베트남	인도
검증 대상	수입 상품의 원산지 상품 결정 목적 검증 (섬유·의류 상품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요청하는 경우)	무작위 또는 수입 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 가능	수입 상품의 원산지 상품 여부 결정 목적 검증	무작위 또는 수입 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무작위 또는 수입 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특혜 관세 배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정보요청 미제출 현지조사 거부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월 내) 미회신 회신에 충분한 정보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서면 정보 미제출 수출 당국의 검증 결과 미회신/정보 불충분 현지조사 거부/미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원산지 요건 미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원산지 요건 미충족 수출자 등 기록 미보관/접근 거부 수출자 등 정보 미제출 수출자 등 현지조사 방해 행위유형 적발

자료: 저자 작성

□ 이처럼 FTA 원산지검증 제도는 무역 환경 및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여 협정별 또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성²⁴³⁾이 존재함

2. 문제 제기

□ FTA 원산지검증은 FTA의 원활한 이행과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현재 원산지검증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43)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Rules of origin for the 21st Century*, 2020.

가. 표준화되지 않은 원산지검증 절차

- FTA는 체약국 간에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므로 FTA 이행 시 각국의 무역 특성, 교역 환경 및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
 - 따라서 국가마다 FTA 규정을 국내 법규에 수용하는 방식과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WCO나 WTO와 같은 국제기구는 협의체인 만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FTA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원산지검증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수출입자를 포함한 무역 관계자는 모든 국가의 검증 방식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원산지 규정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다양성으로, 원산지 규정 자체도 해석하기가 어려우며 국가마다 사정에 맞는 원산지 규정들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무역 거래자들은 많은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원산지와 관련한 규정은 협정 및 각국의 국내법 등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FTA를 활용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를 전부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원산지 규정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FTA 체약국은 FTA 협정 및 각국의 자체적인 법규에 따라 원산지검증 절차를 운영하므로 다양한 국가의 검증요청 사항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됨
 -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국의 직접 검증을 우선 원칙으로 적용하나, EU는 수출국의 관세 당국을 통한 간접 검증 방식을 적용함

- 나아가 표준화된 절차 및 양식의 부재는 원산지검증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어렵게 함
 - 원산지검증 준비 과정과 분석 방법, 자료 요청 서류 등 검증에 필요한 각 단계가 모호해지고 검증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어 검증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유발함

- 체계적이지 않은 원산지검증 절차에 검증 태도 및 검증 결과 등과 관련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표준화되지 않은 원산지검증 절차는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될 수 있음
 - 표준화된 절차는 원산지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재의 비표준화 상태에서는 검증자 또는 검증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거나 차별적 적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국제사회의 원산지 규범과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국제적 협력 체계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나. 원산지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

- 원산지검증에 대한 통일된 규정의 부재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국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FTA 관련 국내법과 FTA 협정 간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음
 - FTA 관련 국내법과 FTA 협정상 내용이 상이할 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의견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일부 절차 및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양자 간 또는 다자간의 협정에 대한 원산지검증일지라도 당사국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일부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검증을 엄격하게 시행함에 따라 FTA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 간 검증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 또한 FTA 협정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이 모호하여 기업이 원산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FTA 협정이더라도 체결국 간 원산지 규정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검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된 기준의 부재로 원산지검증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음
 - 특히 실질적변형기준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계약상대국의 소극적 대응

-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계약상대국의 협력이 핵심이나, 현실적인 한계 또는 제한 등에 따른 계약상대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간접 검증 방식의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이며, 수출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회신에 따라 특혜 대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는 법적 또는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음
 - 일부 국가의 관세 당국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반면에 원산지검증에 관한 법규 및 제도를 제정하고 있음에도 강제적 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증 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가 낮아 검증기관 등이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계약당사국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의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음
 - 일부 상대국은 행정적 차이 및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꺼리거나, 검증 요청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 이는 양국 간의 신뢰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원산지검증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계약상대국의 비협조는 결과적으로 수입자의 FTA 특혜 적용의 배제에 따른 FTA 원산지 활용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상대국과의 신뢰도 구축을 위한 원산지검증 절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전략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함

라. 원산지검증 절차의 복잡성 및 검증 대응 역량의 부족

- 원산지검증은 FTA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FTA의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인적 또는 물적인 역량 부족의 문제는 FTA 특혜를 받는 기업과 FTA 특혜를 부여하는 관세 당국에 모두 해당하면서도 서로 다른 원인과 영향을 내포하고 있음

- 우선 기업 측면에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원산지검증은 원산지 소명자료, 원재료 거래내역서, 제조 공정도 등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FTA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검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영세 기업은 원산지 관리 등에 제한적인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관리 전담자 배치가 어려워 원산지검증 대응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함
 - 한국 원산지 정보원의 설문조사(2025)²⁴⁴에 따르면, ‘규제로 느끼는 수입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33.2%)”에 이어 “원산지 규정(19%)”으로 응답함
 - 상기 설문조사에서 ‘원산지 규정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a) 엄격하거나 불명확한 원산지 규정”, “(b) 특혜와 비특혜의 원산지 규정 차이”, “(c) 지나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요구”, “(d) 원산지 증명, 검증 관련 문제” 등의 순으로 답변함
- 또한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업 내부의 관심 또는 지식 부족과 대응 매뉴얼의 부재 등도 리스크로 작용함
 - 많은 기업은 원산지 규정의 세부 내용과 검증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원산지 관리에 소홀하며, 원산지검증 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기업 환경은 원산지검증의 준비시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검증 대응의 효율성을 낮추게 됨
- 결과적으로 기업의 검증 대응 역량의 부족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의 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
 - 원산지검증 요청 서류나 검증 절차에 대한 오해 및 실수 또는 불충분한 대응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배제뿐 아니라 벌금, 과태료 등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각국의 관세 당국은 무역 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FTA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검증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제한적인 인력으로 원산지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44) 설문 대상 총 1,009개의 기업 중 대기업 13개, 중견기업 80개, 중소기업 908개, 기타 8개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포그래픽 제1호, 2025.).

- 관세 당국은 검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검증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적일 뿐 아니라 복잡한 검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의 부담과 피로도가 늘어남
- 상기에서 언급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부족과 법적 또는 제도적 체계의 미비 등도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 대응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함
 - 원산지검증을 위한 표준 절차와 기준의 미비, 기술자원 등의 부족은 관세 당국의 검증 효율성을 저하함
 - 또한 원산지검증 관련 법적 구속력도 낮아 체약국의 대응과 협조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현실은 원산지검증의 성과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
- 이에 기업과 관세 당국은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3. 개선 방안

- FTA 원산지검증은 무역 질서의 형평성 유지 및 적법한 FTA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나, 정형화 또는 통일화되지 않은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검증 절차는 오히려 기업과 관세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여 무역과 FTA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산지검증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와 체약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관세 당국의 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FTA와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가. 원산지검증 절차의 표준화와 국제적 협력 확대

- 국제기구를 통해 FTA 원산지검증 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WCO,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통일화된 규율을 정비하고, 원산지 규정 조화 작업 프로그램(Harmonization Work Programme, HWP)을 구축하고 있음²⁴⁵⁾
 - 이와 같이 FTA 특혜 원산지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 정보 요구 사항 및 원산지 판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당사국 간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FTA는 다자간이 아닌 쌍방의 특혜 부여를 위한 협정에 근거하므로 개별 국가의 무역 특성 및 교역 상황 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의 기본 절차, 양식 등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각국의 원산지검증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 해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법 규정을 찾고 해석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국어 지원 등을 통해 정보 공개의 국제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기업이 유사한 거래관계 또는 무역 환경에서 원산지를 판정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에 따른 판정 결과의 사례 및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원산지검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약국 간 공동 조사 및 관련 세미나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국제 세미나와 교육을 통하여 각국의 원산지검증 모범 사례 및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원산지검증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표준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245) WC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nonpreferential-origin/harmonization-work-programme.aspx> 2017, p 3., 검색일자: 2025. 7. 3.

- 체약국 간 공동 조사 및 참관을 확대함으로써 원산지검증의 국제적 이해 및 정확성을 높이고 당사국 간의 원산지 판정 해석에 따른 이견을 좁힐 수 있음
- 추가로 FTA 체약국 간 원산지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증재 절차를 구축하는 등 원산지 관련 분쟁 해결의 정당성을 높여야 함

나. FTA 협정상 조항의 활용 및 체약국 간의 협력 강화

-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의 비협조로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 체약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선 FTA 협정문에 상호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 양자 간 관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검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호 협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²⁴⁶⁾
 - 한-EU FTA의 원산지 의정서 제6부 ‘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의 제26조(주소의 교환)는 “양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라고 규정함
 - 한-아세안 FTA 경우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23조(관세 연락 창구)에서 “각 당사국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 창구를 지정하고, 일방 당사국의 연락 창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관세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246) 권순국, 「FTA 원산지 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 결과 회신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 사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7, p. 154.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며, 연락 창구는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FTA 체결 시 또는 FTA 협정문에 원산지검증의 상호 협력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상대국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원산지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계약국 간의 공통된 절차와 유연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계약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
- FTA 계약국 간 원산지검증 결과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원산지검증 수행 시 원활하고 신뢰성 있는 검증 절차를 확립하게 함
 - 관세청은 페루산 녹두의 사후 검증과 관련하여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페루 관세 당국 간 국제회의 및 주한 페루 대사관 면담 등을 실시하여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²⁴⁷⁾
 - 이 외에도 EU OLAF 검증 협력 회의와 한-미 FTA 원산지검증 협력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외국 관세 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임²⁴⁸⁾

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원산지검증 시스템의 구축

- 무역 규모 및 수출입 품목 또는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 대상을 선별하는 위험 관리 기반의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관세 당국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통제와 원활화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고위험 품목 및 기업에 검증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오류나 과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247) 관세청, 『2024 관세연감』, 2024, p. 71.

248) 상동

반대로 고의적인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원산지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과정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최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실물 서류 없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나 QR code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약 59% 이상이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²⁴⁹⁾
 - 또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검증 웹사이트²⁵⁰⁾를 통해 관세 당국, 무역업자 등은 ICC CO 라벨이 부착된 원산지 증명서 고유번호 및 상공회의소 인증코드만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함²⁵¹⁾
 - 이에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FTA PASS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원산지 판정을 위한 증명 서류, 데이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원산지검증에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49) 전자와 종이 C/O를 모두 발급하는 경우는 58.54%이고, 전자 C/O만 발급하는 경우는 1.22%이며, 또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중 특혜 C/O만 발급하는 경우가 32.7%, 비특혜 C/O만 발급하는 경우가 32.7%, 모든 C/O를 발급하는 경우는 34.6%임(WCO,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2024, pp. 9~14.).

250) ICC, "Certificates of Origin,"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certificates-of-origin/>, 검색일자: 2025. 7. 2.

251) ICC, *The ICC Guide to Authentic Certificates of Origin*, 2020, p. 7.

- 고위험 품목 외에도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위반에 대해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입자로 하여금 가산세 등 불필요한 과세 추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전심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라.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원산지 관리 전담 배치가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검증 컨설팅 등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 및 검증 절차, 관련 해외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야 함
 - 상담 채널 운영을 통해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영세 기업이 인력, 자원의 부족 등으로 FTA의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유관기관의 원산지검증 관련 전문 컨설팅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FTA 지원센터,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 중이나 원산지검증 대응에 대한 컨설팅은 다소 미비함
 - 이에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모의 검증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우 컨설팅 등의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검증 대응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 FTA-PASS,²⁵²⁾ FTA-KOREA²⁵³⁾와 같이 IT 기반의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252)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https://www.ftapass.or.kr>

253) 한국무역정보통신 원산지관리시스템, <https://fta.utradehub.or.kr>

- 중소기업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관세청은 2020년 인도의 Form I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FTA-PASS를 통해 'Form I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함²⁵⁴⁾
- 시스템의 정기적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담당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활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마. 원산지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 FTA 활용하는 기업 및 무역 거래자 또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FTA는 특혜를 제공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수혜자에게는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됨
 - 특혜관세 적용에 의한 관세 절감이라는 직접적 혜택을 받는 수입자 이외에도 수출량 또는 판매량 증가로 인한 간접적 혜택을 받는 수출자 및 수출 관련 완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자까지 FTA의 수혜자이므로 원산지검증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유의해야 함
 - FTA 적용 위법 시 원산지 조작 또는 관세 포탈 등의 이슈로 벌금 및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되며, 수입자는 FTA 특혜관세의 추징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한편, 수출자는 수입자의 추징에 따른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 따라서 기업은 FTA의 활용에 앞서 FTA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인식 제고가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우선 내부 교육과 정보 전달을 강화하여 원산지검증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함

254)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nttSn=10056109&nttSnUrl=search>, 검색일자: 2025. 7. 3.

- 기업 내부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활용하고 있는 FTA 협정의 변경 내용 및 최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파악해야 함
- 기업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FTA 관련 문서 및 서류 관리 강화 등 사후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기업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관련 문서 등을 관세 당국의 제출 요구 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간(통상 5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등이 작성하고 발급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장, 서명 카드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므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모의 검증을 통해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완제품 및 부품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거쳐 발급해야 하나, 원산지확인서는 자율 발급 방식이므로 원산지 판정 등을 거치지 않고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등에 대한 모의 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에 중요한 요인인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FTA 활용의 특혜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및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음

VI. 결론

- 본 연구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무역 질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검증 제도의 국제적 법령 비교를 통하여 현행 원산지검증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세계 경제의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으로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FTA 체결의 확대는 원산지 규정 준수라는 새로운 과제를 기업과 관세 당국에 부과하고 있음
- 또한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검증의 절차는 협정별 또는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 표준화 등의 부재로 기업과 관세 당국 간 또는 체약국의 관세 당국 간 법률적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적법한 FTA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과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 대응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주요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원산지검증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 결과,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는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등에 대한 이행을 위해 「FTA 특례법」 및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당국은 수입 물품의 FTA 원산지검증뿐 아니라 수출 물품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TA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규정을 국내 법령에서 재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 및 공동 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FTA 협정 자체를 법률과 동일시하여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FTA 원산지검증은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EU 공동 차원에서 관세 사기와 관련한 원산지 조사 또는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FTA와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고 검증 절차를 수행함
 - 베트남의 경우 국제 조약과 「대외무역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FTA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및 RCEP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FTA에 따라 원산지검증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적용되는 FTA 모두 선 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혼합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회신 기간 및 주체, 검증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인도는 「관세법」에 원산지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특히 '원산지 관리 강화 규정 (CAROTAR 2020)'을 도입하여 수입통관 시점에 원산지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국의 원산지검증 법령 및 제도의 비교 분석과 우리나라 주요 검증 사례의 검토를 통해 현행 FTA 원산지검증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였음
- 첫째,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 절차로 인해 기업의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검증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 둘째, 원산지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원산지 판정 등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원산지검증의 지연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함
 - 셋째, 체약상대국의 소극적 대응은 수입자에게 FTA 특혜 적용 배제 및 관세 처분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FTA의 활용을 저조하게 만들며, 나아가 무역 질서의 신뢰성 저하를 야기함

- 넷째, 원산지검증 절차의 복잡성은 기업의 검증 대응의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관세 당국의 제한적인 인력의 한계를 심화시킴
-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국제적 차원에서는 WCO 등 국제기구 또는 FTA 협정 체결국 간의 협력을 통하여 특혜 원산지검증 절차의 표준화를 정립하고 국가 간의 정보 공유 및 행정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제도적 차원에서는 명확한 원산지 규정 해석의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원산지와 관련한 국제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구축해야 함
 - 또한 FTA 계약당사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신뢰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FTA 체결 시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관세 당국은 효율적인 위험 관리 기반의 검증 체계의 정립 등이, 기업에는 원산지 전문가 양성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원산지검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기업 또는 무역 거래자도 원산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FTA의 활용에 있어 책임감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함
- 나아가 연구자들은 향후 기업과 관세 당국이 원산지검증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증 분석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법적 또는 제도적 적합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비용, 검증 지연 효과 등을 계량 분석하여 원산지검증 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디지털 통관, IT 기반 원산지 관리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원산지검증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검증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의 확립과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원산지 관리 지원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제언을 통해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다만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원산지검증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국내 사례 및 법률 중심의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해외 사례 검토와 실증 분석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따른 기업과 과세 관청의 애로 사항 및 경제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산지검증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2020.
- _____, 『2024 관세연감』, 2024.
- _____, 『'24년 수출 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2025.
- _____, 「Origin Verification for Preference and Non-Preference」,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APEC, 인천, 2025.
- 관세청·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2025.
- 권순국, 「FTA 원산지 검증상 계약상대국의 검증 결과 회신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 사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7.
- 김만길·정재완, 「한국과 미국, EU의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58권, 2013, pp. 267~286.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 김재식,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9.
- 김정훈,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따른 양국 관세 당국의 제재 규정 비교」, 『연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원』, 제9권 제1호, 2017, pp. 146~170.
- 남풍우·안재진, 「EU와의 FTA 체결 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 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2008.
-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교육』, 2024.

- 박광서·이병문·유광현·방성철·최영주·최성식, 『원산지 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 47~72, 2014.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교역국의 일반 원산지 제도 조사』, 2019.
- 최흥석·류원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 환경 속 수입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포그래픽 제1호, 2025.
- _____,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상관관계 분석』, 20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산지관련 법령 체계의 국제 비교 연구』, 2015.
- _____,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중국편』, 2018.
- 한일권, 「FTA 원산지 수입검증 사례연구」, 『FTA 무역리포트』, 통권 46호, 2024.

〈외국 문헌〉

- CBIC(The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Customs Rules 2020 (CAROTAR 2020)*, 2020.
- ICC, *The ICC Guide to Authentic Certificates of Origin*, 2020.
- Indirect Taxes and Customs, *Customs Rules 2020(CAROTAR 2020)*, 2020.
-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Rules of origin for the 21st Century*, 2020.
- WCO,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17.
- _____, *Guidelines on certification of origin*, 2014(updated in 2018).
- _____,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2024.

〈법령 및 판례〉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베트남 FTA 협정문」
「한-아세안 FTA 협정문」
「한-인도 CEPA 협정문」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한-EU FTA 세관 분야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의정서」

미국, 「19 U.S.C(United State Code)」, 「19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베트남, 「베트남 관세법」, 「물품 원산지에 관한 대외무역관리 시행령」

인도, 「인도 관세법」,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Notification No. 81/2020-Cus
toms)」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EU, 「UCC(Union Customs Cod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Regulation (EU) No 952/2013」

「WCO 개정 교토협약 부속서 K」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4두4290, 2014두 8391 및 5644 판결

〈온라인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https://www.ftapass.or.kr>

관세청 종합솔루션(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한국무역정보통신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https://fta.utradehub.or.kr>

관세청,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보도자료, 2020. 9. 15.

『연합뉴스』, 「관세청, 대미 수출품 대상 ‘FTA 원산지’ 기획 검증」, 2025. 3. 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5038500002?input=1195m>, 검색
일자: 2025. 4. 7.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ftaeocenter/221346993860>, 검색일자: 2025. 6. 23.

『중앙일보』, 「제품의 죽보까지 탈탈 툰다... ‘관세 장벽’ 만큼 높아지는 ‘원산지증명」, 2025.

4.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024>, 검색일자: 2025. 6. 17.

KOTRA,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21195,

검색일자: 2025. 6. 30.

EU, “Quick guide to working with rules of origin,”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quick-guide-working-rules-origin>, 검색일자: 2025. 6. 30.

_____, “Access2Market,”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

- #my-trade-assistant, 검색일자: 2025. 6. 30.
- ICC, "Certificates of Origin,"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certificates-of-origin/>, 검색일자: 2025. 7. 2.
- Irish Tax and Customs Revenue, <https://www.revenue.ie/en/customs/businesses/origin/preferential-nonpreferential/suppliers-declaration.aspx>, 검색일자: 2025. 7. 2.
- OLAF, "Customs fraud," https://anti-fraud.ec.europa.eu/policy/policies-prevent-and-deter-fraud/customs-fraud_en, 검색일자: 2025. 6. 30.
- U.S. CBP, "Korea FTA Summary," <https://www.cbp.gov/document/guidance/korea-fta-summary>, 검색일자: 2025. 6. 16.
- WC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nonpreferential-origin/harmonization-work-programme.aspx>, 검색일자: 2025. 7. 3.
- _____,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preferential-origin.aspx>, 검색일자: 2025. 6. 17.
- _____,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activities-and-programmes/nonpreferential-origin.aspx>, 검색일자: 2025. 6. 17.
- WTO, "Rules of Origi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e.htm#rules, 검색일자: 2025. 6. 17.
- _____, "Technical Information on Rules of Origi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info_e.htm, 검색일자: 2025. 6. 17.

관세연구 25-02
FTA 원산지검증 제도의 국제 비교

발 행 2025년 9월 30일
저 자 정재호·나지수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주)세일포커스
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0000-000-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